17년 작은미술관사업 확대운영방안 연구

2018. 02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

본 보고서는『작은미술관 확대운영 방안연구』에 관한 연구결과로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귀하

본 보고서를
『작은미술관 확대운영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2월

㈜지역문화관광네트워크

대표 김 효 정

목 차

제1장 과업개요

01 과업 배경 및 목적 ····· 3
1. 과업 배경 ····· 3
2. 과업 목적 ····· 4
02 과업 범위 및 수행체계 ····· 5
1. 과업 범위 ····· 5
2. 과업 수행체계 ····· 6

제2장 사업성과 및 한계

01 사업추진현황 ····· 9
1. 작은미술관 사업개요 ····· 9
2. 작은미술관 조성현황 ····· 12
3. 작은미술관 사업지원현황 ····· 13
02 사업추진성과 ····· 14
1. 작은미술관 운영현황 ····· 14
2. 작은미술관 운영결과 ····· 18
3. 작은미술관 만족도 ····· 23
03 사업추진한계 ····· 29
1. 작은미술관 사업운영 ····· 29
2. 작은미술관 성과공유 ····· 30

제3장 작은미술관 확대 필요성

01 미술전시공간 현황 ····· 33

1. 미술전시공간 현황 ····· 33
2. 미술관 현황 ····· 34
3. 사립미술관 현황 ····· 36
4. 복합문화공간 현황 ····· 37

02 적용가능 공공공간 ····· 39

1. 적용 가능한 공공공간 유형 ····· 39
2. 문화예술회관 전시공간 ····· 42
3. 실태 및 수요조사 ····· 45

03 사업확대 필요성 ····· 54

1. 미술공간의 양적 확대 필요 ····· 54
2. 미술전시공간 운영활성화 필요 ····· 56

제4장 작은미술관 확대대상 및 선정 기준

01 사업확대 대상 ····· 61

1. 작은미술관 개념 ····· 61
2. 작은미술관 확대사업대상 ····· 64

02 사업운영 기준 ····· 65

1. 사업추진체계 ····· 65
2. 사업규모 및 적용기준 ····· 66
3. 지원규모 및 지원항목 ····· 67
4.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70

제5장 작은미술관 운영활성화 방안

01 운영지원 ····· 75

1. 전문인력 지원 ····· 75
2. 사업비 지원 ····· 77

02 네트워크 구축 ····· 80

1. 작은미술관 플랫폼 구축 ····· 80
2. 작은미술관 운영활성화 지원 ····· 83
3. 작은미술관 홍보 및 브랜드구축 ····· 85

03 법제도 지원 ····· 87

1. 문화시설 및 유사시설 관련법 ····· 87
2. 작은미술관 법/제도적 기반 마련 ····· 89
3. 작은미술관 모니터링 체계 구축 ····· 91

부록/참고문헌

부록 ····· 97

참고문헌 ····· 100

작은 미술관
SMALL MUSEUM

1 과업개요

Ⅰ. 과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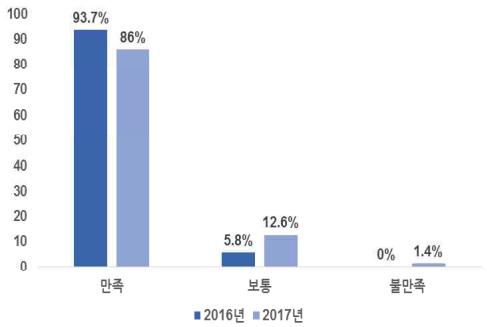
1 과업배경 및 목적
2 과업범위 및 수행체계

01. 과업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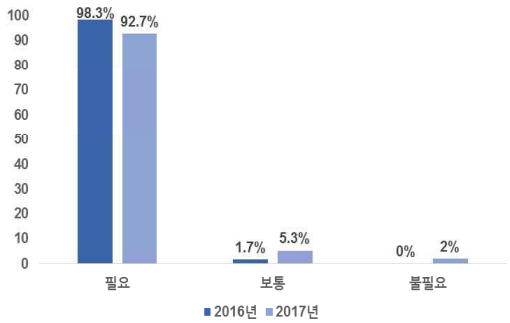
1 과업배경

3년간의 시범사업 추진 결과, 긍정적 평가

작은미술관 사업은 적절한 전시공간이 없는 미술서비스 사각지역 주민들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추진함
2016-2017년 작은미술관 전시관람 및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 작은미술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고, 이용자의 95.5%가 작은미술관의 지속적인 운영을 희망함



[그림 1] 작은미술관 이용만족도



[그림 2] 작은미술관 지속운영 여부

지역 전시공간으로 작은미술관 확대운영 가능성 제기

전국 미술관(2016.12기준)은 229개이나 대부분 수도권(41%), 대도시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전국 230개 시/군/구 자치단체중 미술관이 없는 지역은 총 143개[1] 62%에 해당됨
반면, 미술전시가 가능한 전시공간은 문예회관 전시실 등을 포함하여 615개소가 전국에 분포되어 있어 이를 활용한 전문미술공간으로서 작은미술관의 운영 가능성이 제기됨(표 1참고)

1) 시/군/구 미술관 미조성 지역현황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개수	11	11	4	8	4	3	5	1	19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합
개수	11	9	8	8	10	14	17	0	14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7 문화기반시설 총람 정리

<표 1> 지역별 미술전시공간 분포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합
전시공간	111	37	24	24	26	17	13	2	135	58	41	53	55	71	68	66	43	847
미술관	37	6	4	4	9	5	0	0	49	11	8	9	13	25	11	9	19	229
비율	33.3	16.2	16.7	16.7	34.6	29.4	0	0	36.3	19	19.5	17	23.6	35.2	16.2	13.6	44.2	1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7 문화기반시설 총람 참고하여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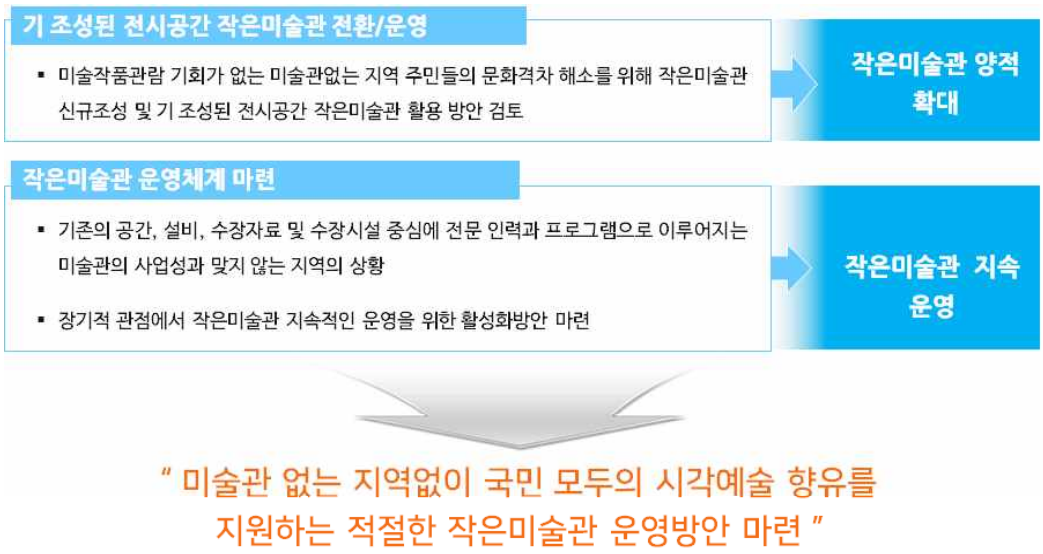
2 과업목적

작은미술관의 확대운영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2015년부터 3년 동안 추진한 작은미술관 사업성과 및 결과를 토대로 작은미술관 확대운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아울러 미술관 미조성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에 위치한 전시공간을 작은미술관으로 전환하여 전문적인 미술서비스 제공 가능성을 모색함

작은미술관 운영체계 마련

장기적인 관점에서 작은미술관에 대한 운영/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미술관 없는 시/군/구 없이 국민 모두가 일상생활공간 가까이에서 안정적으로 시각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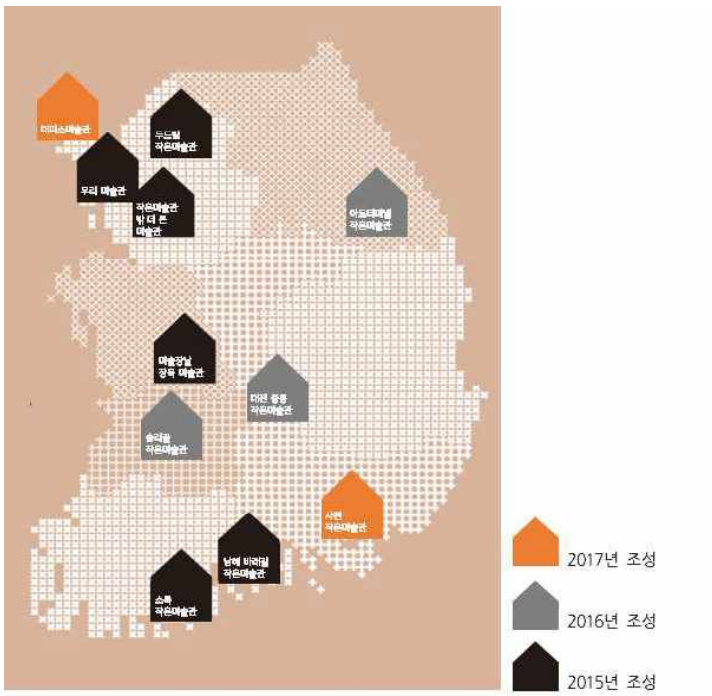
[그림 3] 과업목적

02. 과업범위

1 시/공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

(전국에 소재한 11개 작은미술관) 현재 작은미술관 9개 운영 중



[그림 4] 작은미술관 조성현황

시간적 범위

(계획년도 2018년) 계획기간 2018년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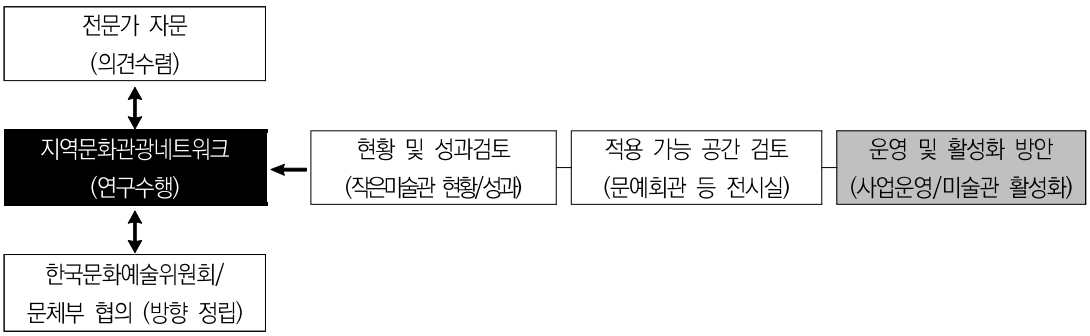
2 내용적 범위

(작은미술관 사업의 추진성과 및 한계) 사업현황 및 성과/문제점 및 한계/시사점
(작은미술관 사업 확대 필요성) 적용 가능한 공공 전시공간/수요조사/종합
(작은미술관 운영방안) 지원대상 및 기준/지원체계/사업관리 운영체계
(작은미술관 활성화 방안) 제도정비/홍보/연계/네트워크 활성화

03. 과업수행체계

1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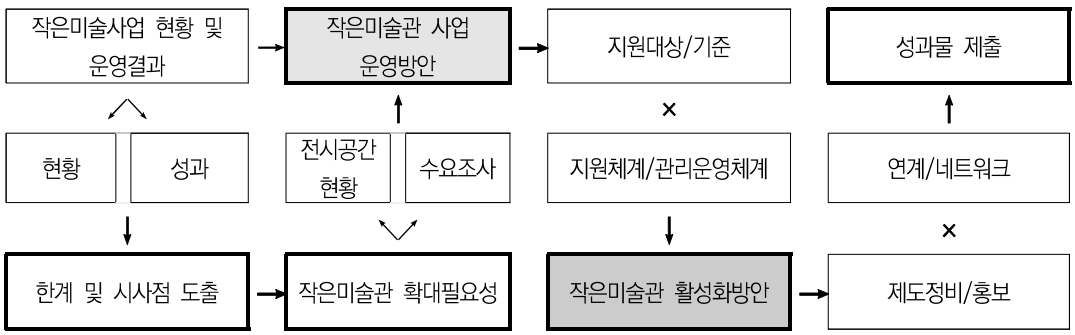
본 과업 추진을 위해 작은미술관 현황 및 성과, 기 조성된 전시공간 운영현황 및 작은미술관 운영 수요조사 등을 통해 작은미술관 사업 운영방안과 장기적 관점에서 작은미술관 활성화방안을 도출함



[그림 5] 연구방법

2 연구추진과정

본 연구는 작은미술관 현황 및 운영결과를 토대로 작은미술관 확대필요성을 도출하고, 작은미술관 운영 가능한 전시공간 현황 및 수요조사를 거쳐 작은미술관 사업운영 및 활성화 방안 마련하고 성과물을 제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됨



[그림 6] 연구추진과정

작은 숲속 박물관
SMALL MUSEUM

2 사업성과 및 한계

II. 사업성과 및 한계

1 사업추진현황
2 사업추진성과
3 사업한계

1 작은미술관 사업개요

개념 및 사업개요

작은미술관 사업은 2014년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발표 이후 작은미술관 공간의 필요성이 시사되면서 2015~2017년 3개년 사업으로 시범운영 됨
등록된 미술관이 없는 지역을 우선으로 2015년 6곳, 2016년 3곳, 2017년 2곳을 선정하여 현재 11개 작은미술관이 조성됨

작은미술관 개념(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비용, 시간,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작지만 친밀한 생활권 내 미술 공간(수장고, 법적 시설 등을 갖춘 등록미술관이 아닌, 프로그램 운영 중심의 미술 공간(권장 적정규모: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82㎡ 미만)
  (참고) 면적이 82㎡이상 시설은 등록미술관 요건(1종 100㎡이상, 2종 82㎡~100㎡미만)
- 생활 속 시각예술 체험 확대를 통해 문화적 수요에 부합하고 미술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높여줄 수 있는 생활문화 공간
- 기존 사업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중심의 공간조성 및 운영사업(2015년~2017년 시범사업)

작은미술관과 기존 미술관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 미술관과 달리 작품 수집 및 소장기능이 없으며, 큐레이팅이 매우 중요한 미술관으로 특히 지역/주민과 예술가의 교류를 통해 미술관을 만들어 가는 상호 능동적인 형태의 미술관으로 기존 미술관에는 없는 새로운 방식임
작은미술관은 소규모 공간이라 공간적 제한만 있을 뿐 작가나 장르적 제약이 없고, 자율적 운영과 기획이 가능한 가장 자율적인 미술관을 지향함[2)]

<표 2> 작은미술관 특징

구분	등록미술관			작은미술관	대안공간
	국립미술관	공립미술관	사립미술관		
공간	신규조성		신규/기존	기존시설활용	신규/기존
기능	소장, 수집, 전시, 교육, 연구			전시, 교육,(연구)	전시, 교육
주요작가군	글로벌 작가-중진작가		중견-유망-신진	제한 없음 지역작가 중심	신진
매개인력	전문 학예사 1명이상 반드시 확보			-	전문기획자
콘텐츠	1개관 1장르는 아니지만 미술관 정체성 위해 장르적 제한(현대미술 장르가 다수)			공간적으로는 제약, 기획/운영 자율적	장르제한(실험적)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작은미술관 모형개발연구, 2017

<표 3> 사업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시각예술 공간이 절실한 지역에 지역유휴공간을 작은미술관으로 조성/운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전국 곳곳에 미술문화가 도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문화향유기회 확대					
사업기간	2015년~2017년 3년 지속사업(현재 시범사업단계로 3차 년도 사업완료)					
추진과정	• 2014년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4~2018)에서 문화융성 실현위한 작은미술관 공간 필요성 시사 • 2014년 문화융성을 위한 작은미술관 조성 프로젝트 추진방향 연구 진행(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 2015년 작은미술관 시범사업 운영(총 6개소 선정) • 2016년 작은미술관 선정(총 3개소 선정) • 2017년 작은미술관 선정(총 2개소 선정)					
사업예산	예산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
추진체계	토토 기금	8억원		7억원		6.3억원
				신규	7천만원	7천만원
		신규	7천만원	2차	4천만원	2차 4천5백
						3차 2천5백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7), 작은미술관 운영예산 관련 내부자료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작은미술관 사업은 사업주관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사업대상지 선정 및 관리, 예산지원 등 사업을 총괄하여 '사업대상지 선정 → 컨설팅/모니터링 → 미술관 조성 → 모니터링 → 평가'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그림 7] 작은미술관 추진체계



[그림 8] 작은미술관 사업체계

선정(지원)기준

신규 사업대상은 공간형태 및 규모, 수행주체의 사업준비 등 작은미술관 사업요건의 정합성(기준 1, 3)과 사업효과(기준 2)를 검토하여 선정함

<표 4> 신규조성사업 기준

구분	세부항목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공간의 적합성	작은미술관 사업추진 방향성과 사업목표의 일치여부 예산, 추진일정 등 효율성과 예산 매칭 등 실현 가능성 다중공공시설로의 공간적합성(안전성, 개방성, 활용여건, 규모 및 입지 등)
2)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효과성	차별화된 프로그램 기획, 운영방안 사업추진 파급효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중장기로드맵, 지자체 추진의지 등) - 지원 종료 후 자생적인 운영가능 여부
3) 수행단체의 경력 부합성	유사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실적 주요 운영/기획 인력의 경력 부합성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7), 작은미술관 사업공모지침

재 지원 사업은 전년도 사업평가(30%) 및 당해 연도 사업계획 평가(70%)로 구성되며, 전년도 사업평가는 목표대비 추진실적에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 평가는 프로그램 기획 및 지속가능성에 역점을 둠

<표 5> 재지원 사업 기준

구분		세부항목
사업 평가	1)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성과	목표대비 추진성과/예산집행/사업추진과정 효율성 및 효과성 공간개선 결과 및 활용성과 프로그램 기획과 공간운영의 차별성 및 독창성 시민참여증가, 예산매칭, 지역협력 등 사업추진에 따른 구체적 파급효과 사업의 지속가능 여부와 자생력 확보 정도
	2) 전년도 성과와 당해 연도 계획과의 연계성	(고려사항) 지원금 정산의 적합성 등 행정평가
서류 평가	1) 사업의 타당성 및 공간의 적합성	작은미술관 사업추진 방향성과 사업목표의 일치 및 개선여부(성과분석 및 개선계획 평가) 예산, 추진일정 효율성과 예산매칭 등 실현가능성 공간유지 및 개선 계획의 적합성(안전성, 개방성, 활용여건, 규모 및 입지 등)
	2) 사업내용의 우수성,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차별화된 프로그램 기획, 운영방안(공간브랜드) 중장기 계획(로드맵)수립여부와 예상 파급효과 사업 자생력과 지속가능성(해당 지자체 등 예산/공간/행정지원 등 지속추진의지)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7), 작은미술관 사업공모지침

2 작은미술관 조성현황

작은미술관 조성현황

작은미술관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시범사업기간 3년간 조성된 곳은 총 11개이며, 2015년 6개, 2016년 3개, 2017년 2개 조성됨

<표 6> 작은미술관 조성현황

구분		지역	개관일	내용
년도	작은미술관			
2015	두드림 작은미술관	동두천시	2015.10.6	두드림패션지원센터 1층 로비 위치, 예술+패션을 주제로 기획전 개최하여 패션지원센터 입주자와 예술가/지역주민 교류 지원
	남해바래길 작은미술관	남해군	2015.10.9	구 보건소 건물을 미술관으로 조성, 남해풍경 기록 공유, 지역주민과 남해여행객 미술향유
	소록도 예술산책 미술관	고흥군	2015.10.20	소록도 병원 내 창고로 사용되던 세탁실을 미술관으로 조성, 편안한 자연을 주제로 선정
	작은미술관 밖 더 큰 미술관	안산시	2015.11.4	작가와 주민이 함께 만드는 아카이브 미술관 지향, 공업단지 내 주민센터 분소 활용
	우리미술관	인천시	2015.11.27	지역유휴공간을 미술관으로 조성, 미술을 통한 마을통합 및 마을역사 공유, 지역의 문화교육/교류공간으로 역할
	두계장옥미술관	계룡시	2015.12.6	두계시장 내 옛 장옥 활용 미술관 조성 시장의 추억과 계룡현대미술 접목 시도
2016	솜리골 작은미술관	익산시	2016.10.26	근대유산 익산수리조합창고 활용 미술관조성 역사적 공간에서 치유의 공간으로 변화
	아트터미널 작은미술관	정선군	2016.11.8	고한사북공용터미널 지하를 미술관으로 조성 석탄합리화사업으로 변화는 강원역사 전시
	중동 작은미술관	대전시	2017.2.2	구 중앙동 주민센터(청춘다락) 일부 활용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청년단체/작가 협업
2017	작은미술관 보구곶	김포시	2017.12.7	주민대피시설 활용 미술관조성, 보구곶풍경전을 시작으로 작가와 주민 함께하는 미술관 지향, 평화누리길 연계 지역명소화 유도
	사천 미술놀이터 작은미술관	사천시	2018.1.7	사천문화재단 1층에 작은미술관 조성 국제환경미술제를 시작으로 현대미술의 대중화 목적

작은미술관 사업지원현황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은 현재 체육기금으로 지원되며,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비 지원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7> 작은미술관 지원현황(2015-2017)

구분	2015	2016	2017	비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8억 원	7억 원	6.3억 원	체육기금
두드림 작은미술관	1.4억 원	0.4억 원	-	신청안함
남해바래길 작은미술관	0.71억 원	0.35억 원	0.2억 원	3차지원
소록도 예술산책 미술관	1.38억 원	-	-	지원포기
작은미술관 밖 더 큰 미술관	0.71억 원	-	-	신청안함
우리미술관	1.4억 원	0.35억 원	0.25억 원	3차지원
두계장옥미술관	1.4억 원	-	-	지원포기
솜리골 작은미술관	-	0.7억 원	0.45억 원	2차지원
아트터미널 작은미술관	-	0.7억 원	0.43억 원	2차지원
중동 작은미술관	-	0.7억 원	0.45억 원	2차지원
작은미술관 보구곶	-	-	0.699억 원	신규지원
사천 미술놀이터 작은미술관	-	-	0.7억 원	신규지원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7) 작은미술관 세부성과내역 내부자료



[그림 9] 2015-2017년 작은미술관 조성현황

02. 사업추진성과

1 작은미술관 운영성과

운영현황

작은미술관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조성된 곳은 총 11개이나 현재 9개소 운영 중에 있으며, 2015년 선정/개관한 소록도 예술산책 미술관, 두계장옥미술관 등 2개 작은미술관은 예산/지역주민 및 지역예술단체 간의 이해관계 등 여러 제반 문제로 운영 중단되었고, 2개 작은미술관은 운영기금 신청 없이 자체운영 중에 있음

- 안산시 작은미술관 밖 더 큰 미술관은 2015년 사업만 작은미술관 지원금으로 운영하였고, 2016년 하반기부터 기금 신청 없이 주민센터가 자체운영하고 있음
- 두드림 작은미술관은 경기문화재단북부문화사업단에서 자체 예산(5,000만원)으로 2017년 8월부터 11월까지 4회의 기획전시를 운영하였고, 2018년도부터 동두천시와 협력(동두천 5천만원-재단 5천만원, 총 1억 예산)하여 운영될 계획임

<표 8> 작은미술관 운영현황

작은미술관	지역	개관일	2015	2016	2017	비고
1. 소록도 예술산책 미술관	고흥군	2015.10.20	○	-	-	미운영
2. 우리미술관	인천시	2015.11.27	○	○	○	
3. 남해바래길 작은미술관	남해군	2015.10.9	○	○	○	
4. 두드림 작은미술관	동두천시	2015.10.6	○	○	△	3차기금신청×
5. 작은미술관 밖 더 큰 미술관	안산시	2015.11.4	○	△	△	2차기금신청×
6. 두계장옥미술관	계룡시	2015.12.6	○	-	-	미운영
7. 아트터미널 작은미술관	정선군	2015.11.8		○	○	
8. 솜리골 작은미술관	익산시	2016.10.26		○	○	
9. 중동 작은미술관	대전시	2017.2.2		○	○	
10. 작은미술관 보구곶	김포시	2017.12.7			○	
11. 사천 미술놀이터 작은미술관	사천시	2018.1.7			○	

작은미술관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재단 또는 예술가단체 등이 운영하는 형태이며, 문화재단의 운영은 문화재단에서 직접 전문인력을 두고 운영하는 형태와 프로젝트 기반 전문인력(큐레이터)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구분됨

작은미술관을 입지특성 및 관람객 특성(공간조성 목적)으로 구분하면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시설과 불특정다수를 고려한 문화시설(관광객 등)로 구분됨

- 관광객을 고려한 작은미술관은 남해바래길 작은미술관과 아트터미널 작은미술관이 대표적임

<표 9> 작은미술관 운영주체 및 공간

작은미술관	운영주체		공간형태		운영특성		비고
	재단	단체	독립	부속	지역	다중	
1. 소록도 예술산책 미술관		○		○			소록도병원세탁실
2. 우리미술관	○		○		○		
3. 남해바래길 작은미술관		○	○			○	
4. 두드림 작은미술관	○			○		△	디자인센터 1층일부
5. 작은미술관 밖 더 큰 미술관		○		○	○		
6. 두계장옥미술관	○			○		△	
7. 아트터미널 작은미술관		○		○		○	정선아리랑재단→아트라인협동조합(운영주체변경)
8. 솜리골 작은미술관	○		○		○		
9. 중동 작은미술관		○		○	○		청춘다락1층일부
10. 작은미술관 보구곶	○		○		○		주민대피시설
11. 사천 미술놀이터 작은미술관	○			○	○		재단1층

운영성과

2015년 작은미술관 운영결과 6개의 작은미술관이 개관하여 전시 및 행사 104건이 진행되었고, 작은미술관 관련 보도는 약 190건이며 주로 개관과 관련된 보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짐
2016년도 작은미술관 운영결과 2017년 3월 현재 6개 작은미술관에서 총 30건의 전시와 90개의 교육 및 아카이브, 마을프로젝트 등 진행되었으며, 관람객수는 33,769명, 언론보도 건수는 142건임

2017년 작은미술관 운영결과 2018년 3월 현재 9(7개 지원금 받음)개의 작은미술관이 운영되었고, 총 36개의 전시와 92개의 교육 및 프로그램, 행사 등이 진행되어 관람객수는 58,423명, 언론보도 건수는 257건에 이름

- 우리미술관의 경우 교육 및 레지던시 입주작가, 마을잔치 등 행사는 작은미술관 운영비와 별도로 인천동구청(190,000,000원)지원을 받아 진행됨
- 두드림 작은미술관은 경기문화재단북부문화사업단 자체운영으로 4차례의 기획전시가 진행되었음
- 향후 기금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작은미술관에 대한 성과관리체계가 필요함

언론보도는 개관과 관련된 보도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시/프로젝트와 관련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참여 작가 및 교육/프로그램 등 참여자 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작은미술관에 따라 참여 작가 및 프로그램 등의 참여자 수, 관람객 수 등에 대한 집계 방법과 내용이 상이하여 전체 통계를 산출하기 어려움
- 향후 공통된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표 10> 작은미술관 프로그램 운영(익년 3월 기준/성과보고서기준)

작은미술관	전시			프로그램/행사/교육횟수			언론보도수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1. 소록도 예술산책 미술관	2	-	-	6	-	-	22	-	-
2. 우리미술관	3	7	7	8	45	49	29	40	67
3. 남해바래길 작은미술관	4	5	6	1	2	1	11	-	3
4. 두드림 작은 미술관	4	7	4	39	26	-	30	10	-
5. 작은미술관 밖 더 큰 미술관	3	10	-	6	-	-	26	-	-
6. 두계장옥미술관	8	-	-	20	-	-	72	-	-
7. 아트터미널 작은미술관	-	4	4	-	4	24	-	7	9
8. 솜리골 작은미술관	-	5	7	-	10	5	-	54	54
9. 중동 작은미술관	-	2	6	-	3	4	-	31	
10. 작은미술관 보구곶	-	-	3	-	-	6	-	-	21
11. 사천 미술놀이터 작은미술관	-	-	3	-	-	3	-	-	103
계	24	30(10)	36(4)	80	90	92	190	142	257

<표 11> 작은미술관 프로그램 운영(익년 3월 기준/전체방문객수)

작은미술관	참여 작가수			프로그램 참여자수			방문객수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1. 소록도 예술산책	9	-	-	40	-	-	5,500	-	-
2. 우리미술관	19	-	10	-	-	225	1,336	3,651	4,129
3. 남해바래길 작은미술관	24	24	18	-	-	15	5,196	3,873	1,360
4. 두드림 작은미술관	15	11	-	690	179	-	2,371	2,617	-
5. 작은미술관 밖 더 큰 미술관	5	-	-	59	-	-	-	-	-
6. 두계장옥미술관	60	-	-	210	-	-	1,860	-	-
7. 아트터미널 작은미술관	-	46	75	-	569	720	-	19,604	39,962
8. 솜리골 작은미술관	-	25	71	-	241	118	-	2,014	1,350
9. 중동 작은미술관	-	32	30	-		81	-	2,010	2,518
10. 작은미술관 보구곶	-	-	13	-	-	120	-	-	1,104
11. 사천 미술놀이터 작은미술관	-	-	90	-	-	100	-	-	8,000
계	132	138	307	999	989	1,379	16,263	33,769	58,423

<표 12> 작은미술관 운영현황(2018.3월 현재)

구분	운영 여부	공간형태	운영주체	운영 인력	시설현황(㎡)			운영예산(천만원)			프로그램*			관람객수(명)		
					소유형태	시설	규모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두드림 작은미술관	◎	부속	경기문화재단	1	지자체	전시장1	46	14	9	5	전시4 교육39	전시6 교육26	전시4	2371	2617	-
남해바래길 작은미술관	○	단독	대안공간마루	3	지자체	전시장1	73	7.1	6	4	전시4 교육1	전시5 교육2	전시6 교육1	5196	-	1360
소록도 예술산책 미술관	×	부속	착착	5	국가	전시장1	198	13.8	-	-	전시2 교육6	-	-	5500	-	-
작은미술관 밖 더 큰 미술관	◎	부속	㈜티팟/ 주민센터	1	지자체	전시장1 교육장1	165	7.1	-	-	전시3 교육6	전시10	대관	2971	-	-
우리미술관	○	단독/부속	인천문화재단	3	지자체	전시장1 교육관1	66 129	14.4	7	3.58	전시3 교육8	전시3 교육45	전시7 교육49	1336	3873	4129
두계장옥미술관	◎	단독	계룡시	2	지자체	전시장1	172 52	14	-	-	전시8 교육20	-	대관	1860	-	-
솜리골 작은미술관	○	단독	익산문화재단	1	지자체	전시장1	59.5	-	10	8.5	-	전시5 교육14	전시7 교육5	-	2014	1350
아트터미널 작은미술관	○	부속	아리랑문화재단/아트라인	5	지자체	전시장1	80	-	10	6.9	-	전시4 교육4	전시4 교육24	-	19604	39962
중동 작은미술관	○	부속	대전문화재단	3	지자체	전시장1	84	-	11	9	-	전시2 교육3	전시6 교육4	-	2010	2518
작은미술관 보구곶	○	부속	김포문화재단	3	지자체	전시장1	100	-	-	9.99	-	-	전시3 교육6	-	-	1104
사천 미술놀이터 작은미술관	○	부속	사천문화재단	6	지자체	전시장1	402	-	-	11.3	-	-	전시3 교육3	-	-	8000

주1: ◎ 작은미술관지원금 신청없이 자체 운영 ○ 작은미술관지원사업으로 운영 × 작은미술관운영중단 * 주2: 교육은 체험/교육/프로젝트 포함

2 작은미술관 운영결과

운영결과

2015년부터 3년 동안 작은미술관 운영결과를 살펴보면, 운영주체 및 운영예산 등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미술관 운영의지와 운영비 지원이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예산편성시기/사업시간과 연동되어 작은미술관 전시일수 및 연중운영기간분포 등에 영향을 주고 있음
- 우리미술관의 경우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통하여 작은미술관을 중심으로 교육관, 레지던시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미술/문화프로그램도 다양해지고 수도 많아지고 연중 작은미술관이 운영되고 있음
- 반면, 문화재단이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작은미술관의 경우 예산회계년도와 사업비 지원 시점에 따라 작은미술관 운영에 영향을 받으면서 3월에서부터 사업비 지원이 되는 9월까지 작은미술관이 휴관되는 곳도 발생함

<표 13> 작은미술관별 운영기간

구분	운영기간			비고
	2015	2016	2017	
남해바래길 작은미술관	2015.9.-2015.12	2016.9.-2016.12	2017.8-2017.12	
우리미술관	2015.10-2016.2	2016.4-2017.2	2017.3-2018.1	
솜리골 작은미술관	-	2016.9-2017.3	2017.7-2018.2	
아트터미널 작은미술관	-	2016.10-2017.3	2017.10-2018.2	
사천 미술놀이터 작은미술관	-	-	2018.1-2018.3	
작은미술관 보구곶	-	-	2017.11-2018.3	

자체평가

2015~17년 작은미술관 자체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시각예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소외지역에 문화향유기회 제공과 더불어 지역이미지 개선 및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반면, 작은미술관 운영적인 측면 있어서는 사업기간 및 운영인력 부족과 사업추진절차, 지역민의 다양한 문화수요 요구 등에 있어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운영비 마련과 지역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예술적 시도와 주민과의 소통방법 등이 과제로 남음

- 작은미술관 간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사업지속 수행할 수 있도록 작은미술관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표 14> 자체평가결과(2015-2017)

구분	2015		2016		2017	
	잘된점	문제점 및 애로사항	잘된점	문제점 및 애로사항	잘된점	문제점 및 애로사항
남해바래길 작은미술관	- 구 평산보건진료소를 활용한 예술향유공간 조성 - 평산리 주민들과 매년 2 만명 남해바래길 1코스 다랭이지겟길 탐방객을 연결하는 소통 통로 역할	- 전시와 연계한 작가와의 프로그램 진행 어려움(주민(70-90세)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재편하여 진행) - 지속가능한 운영인력과 프로그램 지원 일정기간 필요 - 주민프로그램(농번기 등) 시간 조정 어려움	- 문화소외지역인 작은마을에 문화사랑방 역할(마을사람들이 찾는 소통공간) - 남해군의 적극적인 미술관 운영과 남해군내 여러 유사 미술관 프로젝트 등 조성되는 등 남해 내 타 지역에 확산 및 변화 시작	- 사업비 교부시기와 남해군 예산편성 시기, 실제 사업기간이 서로 맞지 않아 사업추진 어려움(남해군 예산매칭에 어려움이 있어 전시행사와 홍보, 프로그램 진행) 원활하지 않음 - 지속가능한 운영인력과 프로그램 지원 필요	- 평산리 주민들과 매년 2만명 남해바래길 1코스 다랭이지겟길 탐방객을 연결하는 소통 통로 역할 - 남해홍보 영상물과 엽서로 지역홍보 기여	-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프로그램(아이들이 읽는 남해로드)의 경우 지역특성상 아동수가 적고, 교통이 불편하여 행사진행 어려움 - 지역아이들 참여유도 위해서 교통수단과 학교장지원 필요 - 지속가능한 운영인력 및 프로그램 지원(군단위에서 예산 등 지원받기 어려움)
우리미술관	- 공/폐가를 활용한 지역성 재창안 - 미술관현판 지역주민의 손으로 직접제작 - 주민운영위원회구성을 통한 지역주민 참여기회 확대 - 동구청과의 협약을 통한 작은미술관 지속사업기반 마련(인천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	- 작은미술관, 교육관 등이 이격되어 있어 이용불편 - 소규모 공간 분산되어 있어 공간운영 및 관리 어려움(인건비 증가) - 작은미술관 지속운영에 필수적인 안정적 재정 지원 필요 -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자산취득허용 필요 - 작은미술관 네트워크 구축 통한 상호교류기회 제공 필요	- 주민일상 속 전시 진행 생동감 있는 골목길로 변화 - 지역미술관이라는 지역재생 모델 마련 - 주민수요조사/주민워크숍 등 진행을 통해 작품제작 및 전시로 주민참여도 높임 - 홈페이지제작, 프로그램 및 전시 홍보	- 소규모 공간 분산되어 있어 공간운영 및 관리 어려움(인건비 증가) - 작은미술관 조성운영 사업의 예산집행에서 정산기한 촉박 - 작은미술관 간의 교류, 기존 미술관들과의 교류를 통한 변화하고 능동적인 사업 지속 수행 필요	- 개별 관람외 유치원 단체관람 등 지역에 소재한 시민대상 문화예술향유 공간으로서 역할을 고려한 전시 진행 - 지역대학교 학생 전시 및 문화나눔프로그램 참여유도(인하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경인대학교 아동미술과) - 지역주민 전시장 지킴이로 활용,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 괭이부리마을잔치에 문화나눔 프로그램 참가자 참여, 주민관심도와 만족감 고취	- 작은미술관 및 운영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작은 미술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발전방안모색 기회 마련 - 작은미술관 지속운영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 필요

솜리골 작은미술관	-	-	- 폐건물 물리적 공간환경 개선(이미지개선) - 구도심 소외지역 공간인지도 향상 및 방문자 증가로 문화예술특성화 공간화 - 지역향토문화의 중요성 인식 개선, 애향심/자긍심고취	- 지역특성 반영한 사업의 중장기적 운영계획 수립필요 - 미술관에 시민 공공편의시설(화장실 등), 관리공간 필요 - 코디네이터 전문인력 필요 - 프로그램 지원예산의 합리적/편리한 방식 개선 요구	- 유망하지만 전시기회가 많지 않았던 지역작가에게 전시기회 제공 - 전시작품의 뒷이야기 들려줌으로서 관람객 흥미유발 - 중고등학교, 어린이집 홍보하여 단체관람 등 홍보효과	- 작품 보관장소 협소하여 작품 손상 우려 - 사업계획과 추진 시 변수 발생, 사업계획 변경 및 조정 가능하면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높아질 것으로 기대
아트터미널 작은미술관	-	-	- 전국각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고한사북터미널의 잠깐 쉬어가는 쉼표 역할과 지역주민에게는 일상 속 짧은 시간 투자하여 시각예술 갈증 해소 가능한 환경 제공	- 지원금 교부시기 지연으로 체험프로그램 일정/내용 등 변경 불가피 - 짧은 사업기간으로 전시4회 진행, 여러 문제 발생 - 인력확대 예산추가 및 예산항목 지자체 회계기준과 상이	- 지역 민간단체에서 지역의 시각미술활성화 노력 - 1차는 작은미술관 조성관련 아트축제형태로 운영, 2차는 10명 내외로 공간배분, 편안한 분위기 감상 유도	- 민간단체에서 미술관운영비 마련 어려움(3월-9월까지 공백기간 동안 전시에 대한 압박감 가짐)
사천 미술놀이터 작은미술관	-	-	-	-	- 신인작가 발굴 및 청년작가 지원 - 미술의 일반화와 한시적이나 지역청년 및 노인 도슨트 업무 일자리 창출	- 체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미술교육의 필요성 제기 - 시각예술 뿐 만아니라 다른 장르의 예술을 접목한 교류 활성화 필요
작은미술관 보구곶	-	-	-	-	- 접경지역 보구곶 재해석 기회 제공 - 풍경-사물-인물 순으로 주민참여전시를 통해 지역의 자부심으로 자리 메김 - 김포시내와 외곽 보구곶 교류공간 마련	- 석면철거 및 냉난방기 사용전력 제한 등 예기치 못한 사항으로 공사일정 지연 - 짧은 기간 사업수행으로 충분한 모니터링 시간 부족

운영자 의견

2017~18년 작은미술관 운영자 면담결과, 미술관 운영에 있어 예산매칭과 인력, 행정절차, 작은미술관의 상시운영을 위한 대안(예산과 밀접한 관련 있음)이 필요하며, 특히 지자체의 운영의지에 따라 작은미술관의 상시운영 가능성이 담보된다는 의견이 많음

- 남해바래길 작은미술관의 경우는 지역주민 호응과 외부관람객(관광객)의 반응이 좋아 지자체에서 제2의 작은미술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작은미술관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됨에 따라 운영예산 및 인력활용 등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음
- 반면, 중동 작은미술관의 경우 대전시 중구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공간 활용 및 인력 운영을 통하여 작은미술관 운영을 활성화되고 있어 다각적인 작은미술관 운영방안 모색이 필요함
- 대부분의 작은미술관은 사업기간인 약 6개월 동안만 운영됨에 따라 실제 운영기간 동안 매우 바쁘게 전시가 진행되고 전시가 끝나면 공간은 비어 있게 되는 사업구조로서 장기적으로 미술관 운영계획을 세울 수가 없고 전문기획자 공모도 어려운 상황임

작은미술관을 전시관람 목적으로 방문하는 비중이 높지만 상설전시 할 수 없는 공간적 한계로 인하여 미술관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작은미술관의 공간규모 및 운영형태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함

- 아울러 문화소외지역에 위치한 작은미술관은 전시이외에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사랑방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어 지속적으로 작은미술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표 15> 작은미술관 운영자 면담(2017/2018년 종합)

구분	내용
예산문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예산 문제이며, 작은미술관 지속운영에 필수적인 안정적인 재정지원 건의함 - 지원 사업이 완료될 경우 많은 경우, 지자체의 작은미술관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경우 시설운영비 확보에 어려움 예산 - 작은미술관 예산집행 등과 관련 집행 까다로움/재단내부규정과 상이하여 문제발생
인력부족	기획자 혼자 작은미술관 관련 업무(프로그램기획, 미술관운영/관리, 관람객 응대 및 해설, 미술관 홍보, 행정처리) 진행 어려워 추가인력 지원 필요
상설운영	기획전시 위주이나 1년 동안 작은미술관 상설운영을 위한 작품대여 등 장기전시 방안 필요 - 작은미술관 교류전/작품대여전시 등을 위해서 운반비/보험비 등 최소한의 경비 지원 필요
정체성	- 작은 공간이 주는 편안함과 지역주민이 공감할 만한 주제 전시와 기획, 전시와 연계한 참여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좋으나 이러한 형태의 공간은 타 사업으로 조성/운영되는 것이 많아 작은미술관의 정체성의 모호함과 사업의 중복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작은미술관에서 전시뿐 만아니라 예술인들의 역량강화 및 소통강화를 위한 교육, 청소년을 위한 미술교육, 지역예술인에 대한 인식 및 이미지 향상 등을 위한 프로그램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작은미술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임
네트워크	작은미술관 사업에 참여 기관 및 단체들과 워크숍/토론회 등 마련하여 상호교류 기회제공 필요 다른 장르의 예술을 접목한 다양한 시도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다채로운 예술경험 제공 필요

종합 및 시사점

작은미술관 입지(접근성과 서비스권) 특성에 따라 작은미술관 이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적 특성에 따른 중장기적 계획 수립과 사업추진에 따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하여 사업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작은미술관 운영이 활성화된 곳 중에서 남해바래길 작은미술관이나 아트터미널 작은미술관의 경우 외부관람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우리미술관, 중동 작은미술관, 작은미술관 보구곶은 이용객/관람객 수는 적으나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및 시각예술 이해증진을 지원하는 하나의 문화거점 역할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음
- 남해바래길 작은미술관은 인구특성과 생업시간 등으로 인해 주민프로그램 시간 및 내용 변경한 경우가 발생하였고, 우리미술관은 별도의 교육관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서 초등학교/중학교 학생들의 교육수요가 높은 반면 중동 작은미술관은 원도심에 청춘다락방 1층에 있어 청년층과 문화향유 기회가 적은 원도심 주민의 관심이 높은 등 작은미술관의 입지적 특성에 따라 작은미술관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다른 것으로 나타남

작은미술관의 지속적/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예산 및 인력 안정화를 위한 노력과 작은미술관 네트워크 구축 등 소통과 교류를 통하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표 16> 작은미술관 운영결과 및 시사점

구분	내용
운영주체/운영인력	- 재단 vs 예술단체: 예술단체가 운영하는 소록도 예술산책 미술관, 작은미술관 밖 더 큰 미술관 등이 예산/기획력 등의 문제로 운영/종료하는 등 예산편성 및 운영 등에 한계 발생 - 재단 내 전문인력 vs 재단+외부전문인력: 재단에서 외부전문인력을 통한 작은미술관 운영 시 재단행정시스템/기획/운영지침과 외부전문가 기획/운영 간의 문제발생 - 지속가능한 운영인력과 프로그램 지원 필요
운영공간/입지	- 미술서비스권(미술관설치여부 vs 인근지역미술관 이용여부): 문화서비스 이용권에 따라 작은미술관의 효용성 제고 필요(장옥미술관의 경우 3.5㎞ 문예회관 내 전시관, 30분 거리 대전시립미술관 등 위치) - 교통접근성: 접근성이 좋거나 통행량이 많은 곳에 위치할수록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사업기간/사업운영	- 사업기간 9/10월-익년 2/3월: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작은미술관 자체예산으로 운영 → 전시/행사 운영 없는 곳 발생) - 사업운영: 짧은 사업기간, 사업운영지침 등으로 인해 실질적 사업운영 어려움
운영예산	- 지자체 매칭 여부 vs 재단/단체자체 예산 가동력: 지자체 관심이 높고, 운영주체 작은미술관 운영 활발하게 전개됨(우리미술관, 솜리골 작은미술관 등) - 운영주체 자체예산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 있음(아트라인협동조합의 경우, 2018년도 타 기관 공모사업(프로젝트) 연계 프로그램 진행 추진)
네트워크	- 변화에 대응하고 합리적 작은미술관 운영을 위하여 작은미술관 및 미술관 네트워크 구축 필요

3 작은미술관 만족도

조사개요

2015-2017년 3년간 작은미술관에서 진행되었던 만족도 조사 중에서 2016/2017년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함

<표 17> 작은미술관 관람객 만족도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일시	미술관별 전시기간 중
조사방법	설문조사(2016/2017년 종합)
조사대상	작은미술관 방문객 중 일부
조사내용	작은미술관 방문목적, 정보획득, 미술관 방문빈도, 미술관에 대한 관심 증대, 재방문 또는 타미술관 방문 의향, 지역발전 여부, 지속운영 필요성, 만족도, 추천여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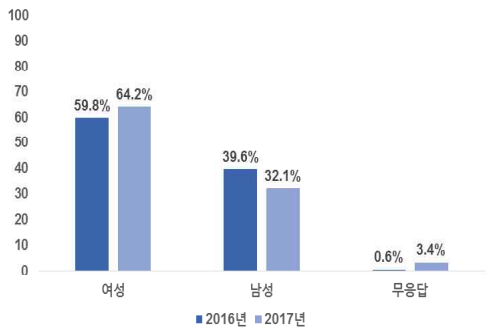
조사결과

작은미술관 방문객 비율은 거주지역별로는 작은미술관 조성지역 외 지역(63.7%)이 많고, 성별로는 여성(62%), 연령별로는 20대(27.3%), 직업별로는 대학생과 직장인이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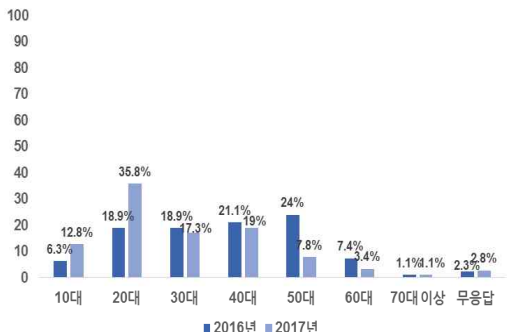
- 2016년에 비해 10대와 20대의 방문비율이 크게 증가하였고, 작은미술관 조성 외 지역의 비율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18> 기본정보 부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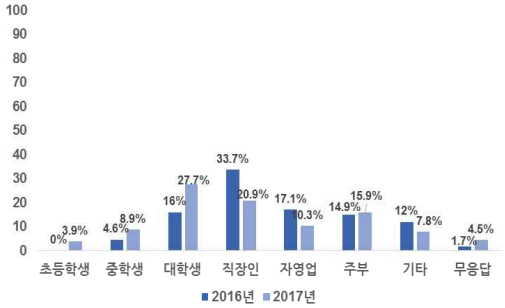
구분	내용
성별	방문자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 62%, 남성 35.85%로 여성 방문 비율이 더 높음
연령	연령별 비율에서 20대가 27.3%로 가장 많이 방문하는 것을 알 수 있음
직업	직업 비율을 살펴보면 직장인 27.3%, 대학생 21.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거주지	미술관 조성 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61.55%로 타 지역에서도 많이 방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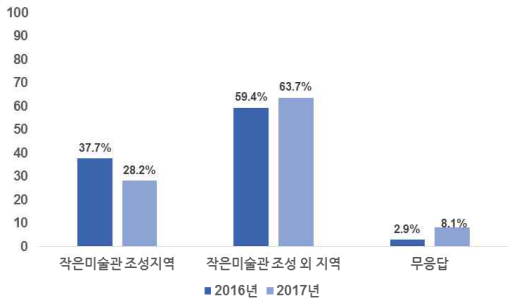
[그림 10] 성별



[그림 11] 연령



[그림 12] 소속(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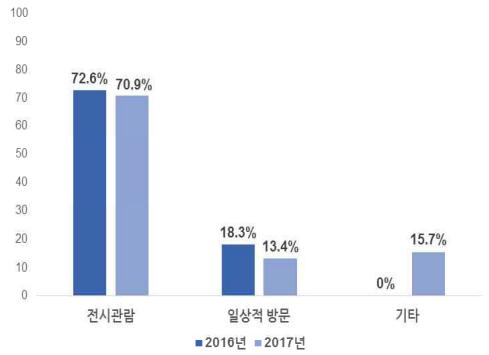
[그림 13] 거주지

작은미술관 방문 목적은 전시 및 관람을 위해서가 71.5%로 가장 많았으며, 지인의 추천으로 작은미술관을 방문(40.3%%)가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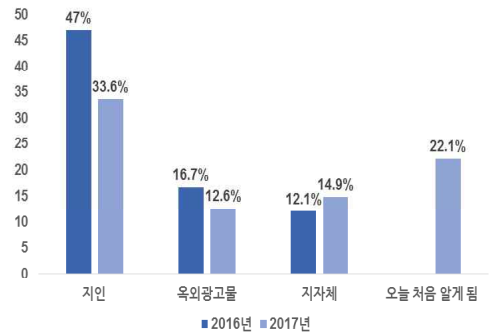
- 작은미술관 방문목적의 경우 2016년에 비해 전시 및 관람, 일상적 방문이 감소한 반면 체험프로그램 실습, 우연히 등 다양한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15.7%로 증가하였음
- 정보획득은 지인에 의한 정보획득은 감소한 반면 지자체 홍보를 통해 알게 된 경우가 12.1%에서 14.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작은미술관에 대한 관심도를 예측할 수 있음

<표 19> 방문목적 및 정보획득 부문 결과

구분	내용
방문목적	작은미술관을 방문하는 사람들 중 평균 71.75%가 전시 및 관람, 15.8%가 일상적 방문, 15.7%가 기타로 대부분이 전시 및 관람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알 수 있음
정보획득	작은미술관에 대한 정보획득에 있어 지인의 추천이 평균 40.3%, 옥외홍보물이 13.5%, 지자체 홍보가 13.5%로 지인을 통해 작은미술관에 대해 인지하는 경우가 많음



[그림 14] 방문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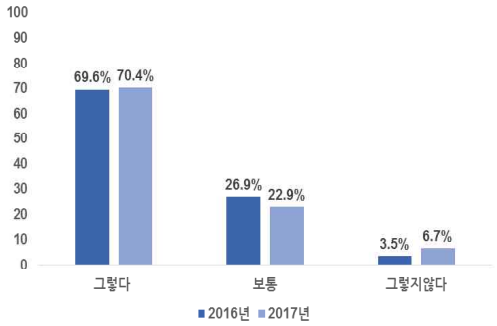


[그림 15] 정보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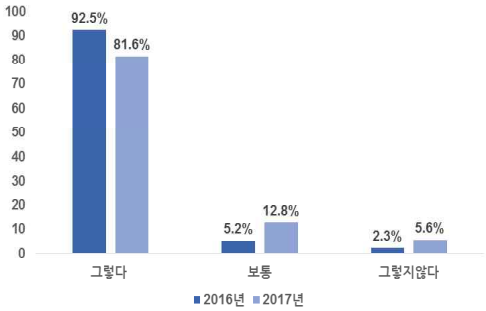
작은미술관 방문으로 미술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재방문 또는 다른 지역의 작은미술관 방문 의향에도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남

<표 20> 미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변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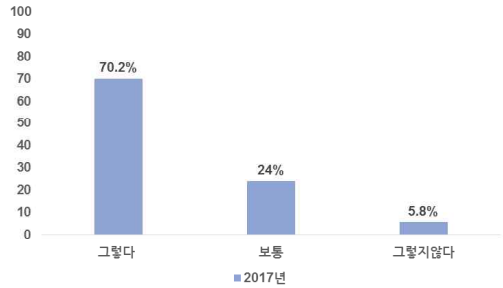
구분	내용
미술관에 대한 관심 증대	작은미술관을 방문한 사람들 중 평균 70%가 작은미술관 사업을 통해 미술관에 대한 관심이 증대 했다고 대답함
재방문 또는 타미술관 방문 의향	작은미술관 재방문이나 타 미술관 방문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서 '그렇다'라고 답한 사람이 평균 87%로 작은미술관 방문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음
미술에 대한 이해도 향상	작은미술관을 통해 미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느냐라는 질문에서 '그렇다'가 70.2%(2017년)로 미술에 대한 이해도 향상에 기여 한 것으로 알 수 있음



[그림 16] 미술관에 대한 관심 증대



[그림 17] 재방문 또는 타미술관 방문의향



[그림 18] 미술에 대한 이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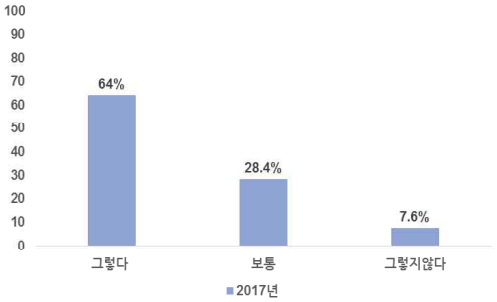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미술이 쉽고, 다른 입장에서 전시품을 보게 되었다"
"일상에 색다른 체험으로 변화를 주게 된다"
"미술관을 접하면서 새로운 것에 대해 알아가거나 높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2017년 설문조사 내용 일부)

작은미술관을 통한 지역방문객 증가는 64%로 크지 않고 작은미술관을 통한 지역발전 효과는 2016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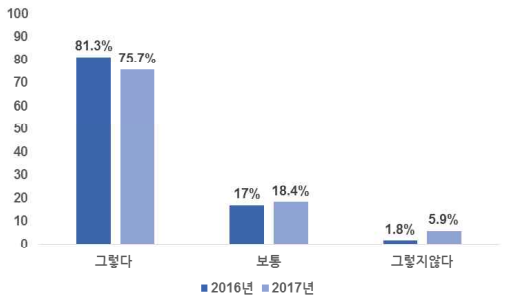
- 작은미술관을 통해 지역의 개성을 드러내고 지역특성을 주민들과 상호 공유할 수 있으며, 지역민들이 예술을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함
- 지역 내에 작은미술관이 위치한 것 자체에 대해 지역의 자긍심을 느끼고, 작은미술관이 동네분위기와 문화향유, 주민화합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표 21> 미술관을 통한 지역발전 및 지역방문객 증가 부문 결과

구분	내용
지역방문객 증가	작은미술관을 계기로 방문객 증가 여부에 있어 64.0%(2017)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함
미술관을 통한 지역발전	작은미술관을 통한 지역발전 여부에 있어 평균 78.5%가 작은미술관이 지역발전에도 긍정적 효과를 주었다고 인식함



[그림 19] 미술관을 통한 방문객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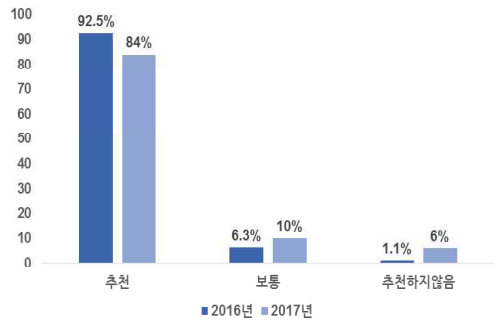
[그림 20] 미술관을 통한 지역발전 부분

〈2017년 설문지 내용 중〉
"미술관에서 전시되는 예술작품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세상과 소통하고 좀 더 건강하게, 지역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고양될 수 있을 것 같다"(중동작은미술관 방문객)
"사북같은 소도시에 미술관이 생겨 기쁘다.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필히 미술관을 좋아할 것이다. 규모는 작지만 인테리어, 분위기, 작품은 도시와 비교하여 전혀 손색이 없다"(아트터미널 초등학생 작은미술관조성지역 내 방문객)
"작은미술관이 동네분위기와 문화향유에 도움을 주고 주민의 화합에도 도움이 된다"(우리미술관 방문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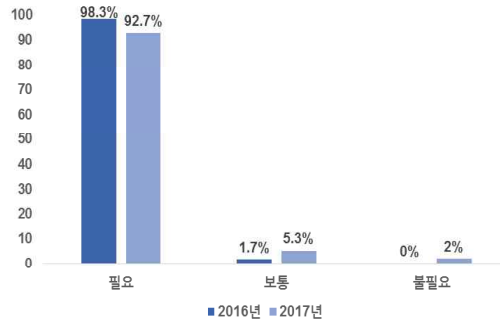
작은미술관에 대한 타인에게 추천여부에 있어서 추천하겠다고 답변한 비율은 평균 88.3%, 작은미술관 지속운영은 필요하다는 응답 95.5%로 매우 높음

<표 22> 작은미술관 추천여부 및 지속운영 부문 결과

구분	내용
작은미술관 추천여부	작은미술관을 방문한 사람들 대부분(평균 88.3%)이 타인에게 추천 의향이 있음
작은미술관 지속운영	작은미술관의 지속운영에 대한 질문에 평균 95.5%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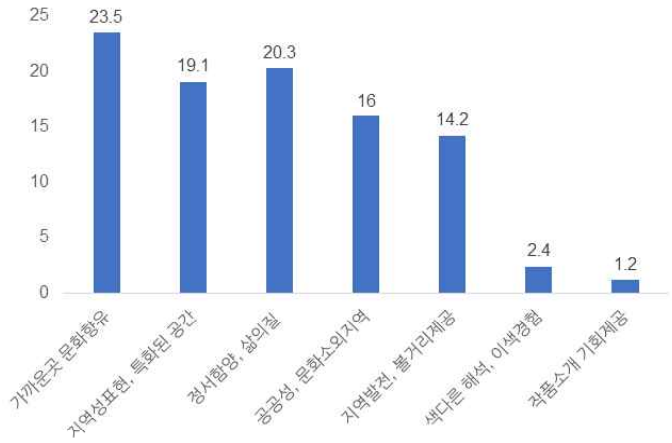


[그림 21] 작은미술관 추천의사



[그림 22] 작은미술관 지속운영

작은미술관이 지속운영 되어야하는 이유로는 일상생활 가까이에 있어 문화향유에 도움(23.5%), 정서함양 및 삶의 질에 도움(20.3%), 문화소외지역에 미술(예술)의 공공성 확대(16%), 지역발전 및 볼거리 제공(14.2%)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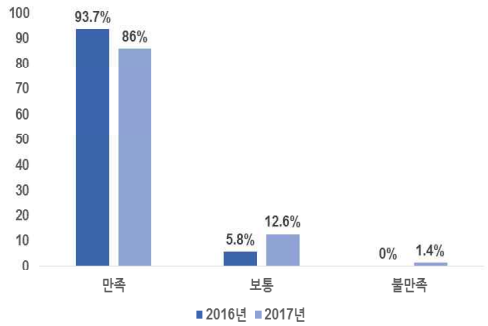
[그림 23] 작은미술관 지속운영 이유(2017년)

"여기가 아니면 미술관이 멀어 모르고 산다"
"다양한 미술의 이해와 저변확대를 위해 작은 지역에서부터 점진적으로 미술관 및 문화공간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소외지역에서 이렇게 좋은 문화공간이 생기고 문화프로그램을 상시로 접할 수 있어 행복하다"(설문내용 일부)

작은미술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2016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지만 높은 편이며, 특히 지역주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표 23> 작은미술관 만족도

구분	내용
작은미술관 이용 만족도	작은미술관 이용 만족도에 있어서 대부분(86%)의 사람들이 만족함



[그림 24] 작은미술관 만족도

"옆집처럼 친근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좋다. 타 지역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설명할 거리가 있어 좋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친 몸과 정신을 맑게 하는 기분이었고, 이러한 미술관이 우리 중구주변에 많이 있다면 또 하나의 나의 쉼터 같은 장소가 생길 것 같아서 좋다"
(2017년 설문조사 내용 일부)

기타의견으로 시민들이 가까이 자주 갈 수 있는 미술관이 있어 좋기 때문에 지역마다 동네마다 확대하고, 미술관규모는 보다 커지고 전시 및 프로그램이 더 다양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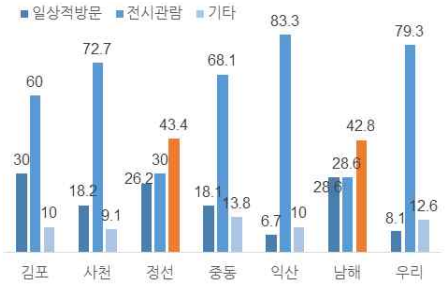
종합 및 시사점

작은미술관은 미술관이 없는 지역에 있어 전문미술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실제 작은미술관 경험이 다른 미술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음

- 다른 미술관 방문을 희망하는 비율이 평균 87%로 나타나 작은미술관이 전반적으로 시각예술과 미술관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작은미술관 방문목적은 평균 70%이상이 전시 및 관람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만족도 역시 평균 83% 이상이나 입지적 특성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작은미술관의 입지적 특성 및 지역여건에 따라 작은미술관 운영형태를 다르게 할 필요가 있음

- 아트터미널 작은미술관과 남해바래길 작은미술관의 경우 전시관람 목적보다는 기타(관광 및 다른 방문 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은미술관에 대한 만족도 역시 약 70% 정도로 다른 미술관에 비해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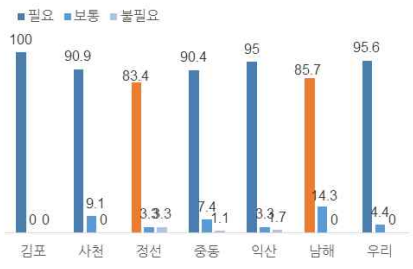
[그림 25] 작은미술관 방문목적(2017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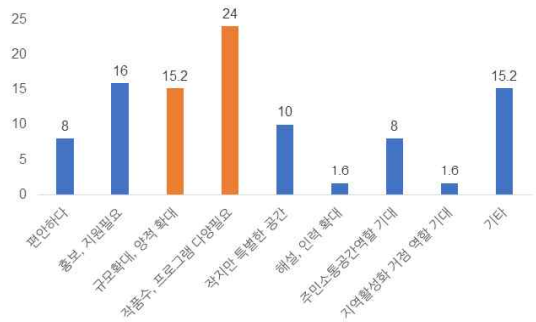
[그림 26] 작은미술관 만족도(2017년 조사)

지속운영에 대한 필요성 역시 평균 96%이상 인지하고 있는 등 작은미술관의 확대 및 지속적인 운영이 요구되고 있어 대안마련이 필요함

- 특히 문화소외지역에서 지역밀착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작은미술관의 경우, 작은미술관의 지속적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7] 작은미술관 지속여부(2017년 조사)



[그림 28] 작은미술관 지속여부(2017년 조사)

1 작은미술관 사업운영

작은미술관 운영 이슈[3)]

작은미술관 운영에서 나타난 주요 이슈 및 한계는 사업운영구조에서 오는 예산매칭 및 지원금 문제, 사업기간, 작은미술관 정체성 및 방향성 등으로 나타남

<표 24> 작은미술관 운영이슈

구분	내용
사업운영구조 및 운영 책임성	작은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위탁하여 사업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지원 대상은 문화재단 또는 민간문화예술 관련 단체가 주체가 되지만 예산은 지자체가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지자체의 소극적인 참여 가능성이 높음 - 실제 민간이 주체가 되어 작은미술관을 운영한 1차년도 사업추진 이후 지자체예산 지원, 지역예술단체협력 및 소통 등의 이유로 중단사례가 나타나는 등 작은미술관 운영에 대한 책임성이 비교적 낮은 것이 문제로 지적됨
예산매칭 및 지원금	작은미술관은 체육기금인 체육기금으로 지원하며, 신규 조성시에는 미술관조성비 3천만 원, 프로그램 기획 운영비에 7천만원 지원하고 재지원인 경우에는 2차 4천5백 만원, 3차는 2천5백만원 지원하고 있음 - 실제 운영자 면담결과 작은미술관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 1년 예산으로 약 1억~1억5천만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지원금으로는 운영이 어려움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나 지자체의 소극적인 참여는 작은미술관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사업기간 및 사업비 지원시기	작은미술관 사업은 3년(신규, 2차, 3차)이나 1차 사업완료 후 평가를 통하여 2차 지원, 2차 지원 완료 후 평가를 통해 3차 지원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작은미술관에서는 예산지원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작은미술관 운영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 - 작은미술관 운영자 면담 결과 최소 3년간 지원보장 속에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사업비 지원시기 또한 공모(6-7월)→결과발표(8-9월)→예산교부(10-12월)→사업정산(2월)로 이루어지는 사업추진절차 상 예산편성시기가 본 사업과 지자체예산편성시기 상이하여 지자체 예산확보의 어려움 초래함
정체성 및 방향성	작은미술관은 전문미술관을 지향하는 경우와 지역주민의 문화예술활동 거점으로서 역할 지향하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남 - 지역주민형 공간의 경우 타 사업으로 조성된 다른 공간이 존재하여 정체성 문제를 야기시키나 이런 유사 공간이 없는 지역에서는 지역주민 예술공간이자 전문미술관으로서 존재할 필요가 있어 정체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임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작은미술관 모형개발 연구용역, 2017.3 p32-36 재정리

2 작은미술관 성과공유

작은미술관 성과이슈

작은미술관 성과공유 측면에서 나타나는 이슈 및 한계는 작은미술관의 양적 열세, 제도 및 관리시스템, 운영인력 및 운영노하우 공유/확산 등으로 정리 가능함

<표 25> 작은미술관 성과공유 한계

구분	내용
작은미술관의 양	현재까지 작은미술관은 11개 조성되어 9개 운영되면서 관람객 만족도가 94%이상이며, 이로 인해 미술관에 대한 관심도가 68% 상승하고 다른 미술관에 방문할 의향이 92.5%, 지속운영의 필요성을 98%가 요구하고, 지역발전에 82%가 긍정적 효과를 인식하지만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작은미술관이 9개라는 적은 수로 인하여 성과를 확산/공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특히 11개 조성 후 9개만 현재 운영 중인 것도 작은미술관 운영 시 도출한 긍정적인 성과와는 별개로 성과공유측면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작은미술관 지원제도 및 관리시스템	작은미술관의 운영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운영예산으로 정부차원에서 시각예술소외지역 대상 미술향유차원에서 작은미술관 운영비 지원과 지자체의 운영예산 지원이 필요하나 현재 작은미술관 운영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상태임 - 작은미술관 성과확산을 위해서는 작은미술관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인 담보 즉 지속운영 가능성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작은미술관 조성 목적 및 역할에 부합하게 작은미술관을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운영 전문인력 확보 및 운영노하우 확산	작은미술관 운영은 현재 문화재단 또는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전문기획가, 큐레이터, 보조인력(해설사, 보조인력) 등으로 1-4명 정도가 운영하고 있지만 인력 고용형태 및 계약 등으로 인한 인력변화가 잦은 편임 - 실제 작은미술관은 지리적으로 지역 중심에서 벗어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전문인력 확보 및 확보된 운영인력 유지 등이 운영상 애로사항으로 나타나 전문운영 인력 확보방안 필요함 작은미술관은 지역에 위치하고 각기 다른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상이한 문제점이 나타나지만 개별 작은미술관 운영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운영 상에 나타나는 문제를 최소화하거나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작은미술관 운영자 네트워크 및 운영/관리 워크숍, 교육 등을 통하여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작은미술관
SMALL MUSEUM

3 작은미술관 확대 필요성

Ⅲ. 작은미술관 확대필요성

1 미술전시공간 현황
2 적용 가능한 공간 현황
3 사업 확대 필요성

1 미술전시공간 현황

미술전시공간 현황

2017년 기준 문화시설은 총 8,234개로 이 중 미술전시공간은 작은미술관 등을 포함하여 847개, 전문성[4]을 갖춘 미술관은 229개로 약 2.9%를 차지함

<표 26> 문화시설 현황(단위: 개, %)

구분	총합	문화시설(8,234개)				미술전시공간(847개)					
		공공 도서관	박물관	작은 도서관	작은 영화관	미술 관	문예 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의 집	대안 공간	작은 미술관
개수	8,234	1,010	853	6,346	25	229	236	228	100	48	6
비율	100	12.3	10.4	77.1	0.3	2.9	2.9	2.8	1.2	0.6	0.1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7 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지역별 미술전시공간 현황

지역별 미술전시공간 및 미술관 분포 수는 경기, 서울, 전남, 경북 순으로 나타나며, 미술관의 수만 비교했을 때에는 제주도가 미술전시공간 대비 미술관 비율이 45.5%로 타 지역보다 미술관의 수가 많이 분포되어 있음

<표 27> 지역별 미술전시공간 분포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합
전시 공간	111	36	24	25	26	18	14	2	137	56	40	52	58	72	66	66	44	847
미술관	39	6	4	4	9	5	0	0	52	11	8	9	15	27	11	9	20	229
비율	35.1	16.7	16.7	16.0	34.6	27.8	0	0	38.0	19.6	20.0	17.3	25.9	37.5	16.7	13.6	45.5	1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7 문화기반시설 총람 참고하여 재정리

4) 전문성을 갖춘 미술관이란 미술관의 공간과 기능을 제공하는 미술관으로 일정한 요건과 일정량 이상의 소장품과 시스템을 갖추고 일정기간 이상 전시하는 공공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작품매매는 이뤄지지 않는 공공적 성격의 공간을 의미함

기존에 조성된 미술전시공간은 수도권보다는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미술관은 특히 도시편중화가 심한편이며 지방이나 농어촌 지역에 미술관이 전무한 곳이 다수임

- 미술전시공간의 66%, 미술관의 72%가 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수치상으로는 비수도권에 더 많이 위치하나 미술관은 수도권에 약 41%가 분포해 다른 시설에 비해 수도권에 더 편중된 편임
- 지방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미술향유 기회제공과 미술향유 균형 도모를 위한 지방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미술관 조성이 필요함

<표 28> 지역별 미술전시공간 분포

구분	미술전시공간		미술관		지역문화기반시설	
	개수(개)	비율(%)	개수(개)	비율(%)	개수(개)	비율(%)
농어촌지역	322	31.3%	62	27.1%	198	34.7%
도시지역	706	68.7%	167	72.9%	372	65.3%
수도권	335	32.6%	95	41.5%	145	25.4%
비수도권	693	67.4%	134	58.5%	425	74.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7 문화기반시설 총람 참고하여 재정리

* 미술전시공간(전시공간, 국공립, 사립, 대학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대안공간, 작은미술관)/미술관(국공립, 사립, 대학미술관)/지역문화기반시설(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대안공간, 작은미술관)

2 미술관 현황

미술관 현황

2017년 기준 전국 미술관은 총 229개로 전년대비 4.6% 증가(2016년 기준 219개)하였고, 운영주체별 미술관 수를 살펴보면 전체 미술관 수 중 사립미술관이 157개소(68.6%)로 가장 많으며, 국립미술관 1개소, 공립미술관 56개소, 대학미술관 15개소로 집계됨

<표 29> 미술관 운영주체별 평균지표 현황

운영주체	미술관 수	1관당 평균			
		직원 수	학예인력 수	소장자료 수	연관람 인원
국립미술관	1	291	25	10,832	2,216,685
공립미술관	56	14.23	2.70	1,161	119,121
사립미술관	157	6.46	1.48	736	53,009
대학미술관	15	5.00	1.13	346	14,124
총 계	229	9.51	1.86	858	76,07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7 문화기반시설 총람 참고하여 재정리

미술관은 전체 문화시설 중 약 9.1%로 도서관, 박물관, 극장 등 타 문화시설과 비교했을 때도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보임

<표 30> 문화시설별 현황

구분	미술관	도서관	박물관	극장	총합
총 개수(개)	229	1,010	853	417	2,509
구성비(%)	9.1	40.3	34.0	16.6	100
인구 100만 명당 시설 수(개)	4.7	20.8	17.5	8.5	51.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7 문화기반시설 총람 참고하여 재정리

지역별 미술관 현황

지역별 미술관 수는 경기 52개소, 서울 39개소, 전남 27개소 순이며, 이 외 지역은 미술관의 수가 없거나 적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남

- 수도권 지역인 서울(39개소), 경기(52개소), 인천(4개소)에 위치한 미술관 합계는 총 95개소로 전국 미술관 총 229개소 중 약 41.5%를 차지함
- 미술관 수로만 보면 지속적인 미술관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등록미술관은 아직도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광역지역임에도 한 곳도 없는 지역도 있음

<표 31> 지역별 미술관 조성 현황(2017)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개수	39	6	4	4	9	5	0	0	52
비율(%)	17.0	2.6	1.7	1.7	3.9	2.2	0.0	0.0	22.7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합
개수	11	8	9	15	27	11	9	20	229
비율(%)	4.8	3.5	3.9	6.6	11.8	4.8	3.9	8.7	1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7 문화기반시설 총람 정리

전국 230개 시/군/구 지자체 중 미술관 미조성 지역은 총 143개이며, 제주도를 제외하고 미술관 미조성 지역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경기, 경남, 경북 순으로 조사됨

<표 32> 시/군/구 미술관 미조성 현황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개수	11	11	4	8	4	3	5	1	19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합
개수	11	9	8	8	10	14	17	0	14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7 문화기반시설 총람 정리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비율은 각각 54.8%, 45.2%로 비슷하나 수도권과 광역시, 제주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도시지역은 24.6%이고, 농어촌지역은 75.4%로 도시와 농어촌지역 간 미술관 불균형 조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남

<표 33> 전국 미술관 미조성 지역 현황

구분	도시지역		농어촌지역		총합	
	개	비율(%)	개	비율(%)	개	비율(%)
전국	68	54.8	56	45.2	124	100
광역자치단체	17	24.6	52	75.4	69	1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7 문화기반시설 총람 참고하여 재정리/* 광역자치단체는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지역의 총합

3 사립미술관

개요

등록 사립미술관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한 미술관으로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을 하는 시설임

- 등록 사립미술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시행령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해야하며, 등록요건은 100㎡이상 전시실 또는 2,000㎡이상의 야외 전시시설을 구비하고 학예사 1명 이상 필요

조성현황

사립미술관은 현재 157개이며, 경기 지역 24.2%, 서울 19.1%, 전남 12.7% 순으로 분포되어 있고, 전국 연평균 개관 일수는 310일, 일평균 관람 인원은 138명으로 나타남

<표 34> 지역별 사립미술관 운영현황

구분	사립미술관(개)	비율(%)	연평균 개관 일수(일)	일평균 관람 인원(명)
서울	30	19.1	275	379
부산	3	1.9	273	28
대구	0	0.0	-	-
인천	2	1.3	365	-
광주	6	3.8	325	17
대전	3	1.9	293	24
울산	0	0.0	-	-
세종	0	0.0	-	-
경기	38	24.2	293	43
강원	8	5.1	312	154
충북	5	3.2	-	-
충남	7	4.5	326	323
전북	12	7.6	300	45
전남	20	12.7	330	29
경북	5	3.2	297	59
경남	5	3.2	299	67
제주	13	8.3	349	494
전국	157	100.0	310	13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7 문화기반시설 총람 참고하여 재정리

4 복합문화공간(대안공간형)

개요

복합문화공간은 포괄적 예술을 수용하고 전시기능을 중심으로 휴게기능, 공연기능, 교육 및 커뮤니티 기능 등의 부가적 기능 및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을 말함

- 법률적으로는「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 따라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이라 정의되어 있음
- 대안공간형 복합문화공간은 비교적 좁은 공간에서 자율적인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공간이며, 새로운 문화영역 개척, 탈장르화되고 융복합된 창작활동을 위한 실험공간, 기술적지원이 가능한 장비, 지원 제도 등을 갖추고 있음

<표 35> 복합문화공간(대안공간형) 개요

구 분	내 용	
전략목표	아마추어 작가와 예술가들의 활동지원을 초점으로 작품의 기획, 전시, 공연 등 운영	
추진사업	작품 기획·전시	상설전, 기획전, 특별전, 대관전 등 다양한 형식의 전시 기획
	공연 및 영화상영	공연기획 및 지원 음악회, 콘서트, 연극 등 운영 장단편영화 상영
	작가 레지던시	레지던시 사업으로 작가들이 입주하여 창작공간 활용 입주 작가들이 교육프로그램이나 작품 전시·발표 등의 프로그램 진행
	생활문화시설	발표장 및 동아리 연습 지원 공간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 및 운동시설 등 결합
	쇼핑 및 식음	식음료 판매, 작가와 일반인들의 휴식 공간
	교육	교육공간 및 창작, 회의, 강의, 학습기능(대관가능)
운영주체	작가 등 창작자 중심의 개인(비영리법인)	
사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5), 창조적 문화융성을 위한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설립 방안 연구보고서 참고하여 재정리

조성현황

2015년 기준 전국 복합문화공간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약136개로 이중 60% 이상이 서울, 경기지역으로 나타나 천만 이상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복합문화공간의 설립이 활발함

- 광역시를 합한 개수는 20개로 전체 15% 수준이며 복합문화공간의 지속적인 운영과 영업 이익 창출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나 제주도는 최근 관광객과 귀농인의 증가로 복합문화공간 설립이 타 지역에 비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임

<표 36> 지역별 복합문화공간 현황(2015)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개수	58	7	5	4	1	2	1	0	29
비율(%)	42.6	5.1	3.7	2.9	0.7	1.5	0.7	0	21.3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합
개수	6	1	4	7	2	3	1	5	136
비율(%)	4.4	0.7	2.9	5.1	1.5	2.2	0.7	3.7	1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5), 2015 창조적 문화융성을 위한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설립 방안 연구보고서 참고하여 재정리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지표추출이 불가능하여 포털사이트의 검색을 통해 전국 복합문화 공간 결과를 도출함(2015년 기준)

2000년대 들어 복합문화공간의 설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10년대에 복합문화공간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세분화되었음

- 2000년 이후 설립된 복합문화공간 상당수가 2012~2015년에 설립되었으며, 이는 복합문화공간의 지속적인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냄

<표 37> 복합문화공간 연도별 설립 현황(2015)

설립연대	복합문화공간 수(개)	비율(%)
1990년 이전	5	4
1990년대	5	4
2000년대	36	26
2010년대	90	6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5), 2015 창조적 문화융성을 위한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설립 방안 연구보고서 참고하여 재정리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지표추출이 불가능하여 포털사이트의 검색을 통해 전국 복합문화 공간 결과를 도출함(2015년 기준)

02. 적용가능 공공공간

1 적용 가능한 공공공간 유형

미술관 이외 전시공간

국공립미술관, 사립미술관, 대학미술관 등 미술관 229개 이외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등에 전시공간(전시장)이 있음

특히 문예회관의 경우 전체 236개 문예회관 중 172개가 전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방문화원의 경우 228개 중 106개가 전시장을 보유하고 있음

- 지방문화원의 많은 경우 문예회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문예회관과 지방문화원의 전시장이 중복/집계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지방문화원의 경우 전시공간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제 전시장 운영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움

<표 38> 문예회관 및 지방문화원 전시장 운영현황(단위:개/㎡)

구분	개수		전시장개수		평균면적		평균전시일수	
	합계	전시장	전체	100이하	전체	100이하	전체	100이하*
문예회관	236	172	303	9	618.60	67.35	183	27
지방문화원	228	106	-	-	218.50	-	-	-

그 외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지역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시범 사업 등 다수의 중앙부처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전시공간이 조성되고 있음

- 이들 사업에서 미술/전시프로그램 형 공간 운영 비율을 보면 생활친화적문화공간 10.81%,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30.8%,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50% 등으로 나타남

<표 39> 전시공간 조성되는 부처 사업

구분	정책 및 사업	시설운영사례
기타 부처 사업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광산생활문화센터, 어깨동무 생활문화센터
	지역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시범사업	군산 근대유산 예술창작벨트, 대구 문화창작발전소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지원사업	남포미술관, 감자꽃 스튜디오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봉화 분천역, 무안 몽탄역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담빛예술창고, 148스튜디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지역 내 유휴공간 활용	청주 동부창고와 연초제조창

<표 40> 유사 사업에서 미술/전시 프로그램 비율(단위: %)

구분		교육 및 학술	공연 및 체험, 행사	전시 (미술관형)	창작 및 창업	문화거리	전시 포함 복합	문화시설 전무
중앙부처 문화공간 사업	생활문화센터 조성	58.3	12.5	-	-	-	29.2	-
	근대산업유산 문화공간	-	-	-	-	-	100	-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39.19	6.76	10.81	-	-	43.24	-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46.2	15.4	30.8	-	7.7	-	-
	폐산업시설문화재생	20	20	50	10	-	-	-
	도시재생 연계 유휴공간 활용사업	27.3	3	12.1	-	-	-	57.6

운영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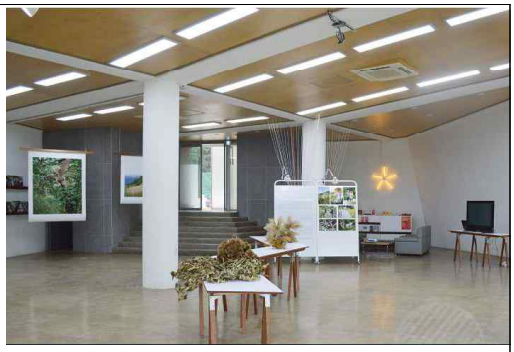
미술관외 전시공간 운영자 면담결과, 전시공간이 있어 보다 질 높은 미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미술관이 아닌 다른 시설의 일부 공간이기 때문에 전시에 필요한 예산편성과 인력 지원의 어려움이 있음

'작은미술관'이라는 브랜드를 가질 경우 예산 및 인력 확보 등 전시공간 운영이 보다 활성화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표 41> 전시공간 인터뷰(2018년 1월 담당자 인터뷰)

구분	지원사업	사업내용	애로사항
148스튜디오(영주시)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2017년 개관/지자체 직접운영 총예산 5억(프로그램 기획1억 600만원/전시 2000만원) 전문인력 2명(계약직/아트디렉터)	프로그램기획/예술교육/전시 담당 전문인력 필요 상설전시 기능 필요(기획전시 위주), 작은미술관 고려하지 않으나 검토 가능
하동문예회관	문예회관 조성(문화인프라구축)	2001설립(전시공간 2016 개관)/지자체직접운영 전시관2(대관1, 기획전시실 1) 총예산 211백만원/전시관련예산 4500(3회 전시)	기획전시설 운영 예산 부족(2018년 처음 예산 편성: 상반기 예산/하반기 예산× - 작은미술관 등 형태 운영 필요 - 보조금 지원요건 제고(단체 위탁 등 통해 검토)
감자꽃스튜디오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지원사업	평창군: 시설조성, 위탁운영 감자꽃스튜디오(임의단체) 전시공간(마을갤러리/예술스튜디오) 대관(대관료무료)/지역작가중심	미술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또는 지정)하고 프로젝트 기반 운영단체 직접경비 지원 필요





감자꽃스튜디오 마을갤러리(마을창조센터)
마을창조센터는 감자꽃스튜디오 본관 앞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원정대사업으로 마을특산품판매 및 홍보를 위하여 지어진 공간이나 현재는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 주로 작가들에게 전시공간을 임대(임대료 없음)하여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간을 빌려 줄때는 지역주민작품전시나 지역(평창)을 주제로 하는 작품전시를 우선으로 하고 있음. 2018년부터는 마을창조센터에서 마을갤러리로 명칭을 바꾸어 운영하고 있음

한계

문예회관을 비롯하여 미술관 이외 지역 전시공간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조성/운영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운영실태조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바 없어 전시공간에 대한 작은미술관 적용 가능성을 예측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 국공립미술관 및 사립미술관 운영실태는 <2014년 전국미술관운영현황 및 실태조사 연구> 및 <2017년 국공립박물관/미술관 관람객 재방문율 및 계층분석을 위한 시범조사> 등과 지역별로는 <2013년 미등록 공립박물관/미술관 운영실태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문화예관 및 지방문화원 등 운영실태는 매년 문화기반시설실태조사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으나 전시장 개수, 전시일수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조사로서 전시장 운영예산, 운영인력, 프로그램, 전시장 이용객 및 전시프로그램 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5)]

<표 42> 전국문화기반시설 조사표(전시장 관련 조사)

구분	전시장	전시일수	공통(인력, 총이용자수, 연간운영비, 수입)
문예회관	개수/면적(㎡)	일(전시장 총합)	총직원수/전문직원수/연간운영비/공연 및 대관수입
지방문화원	면적(㎡)	-	연간참여자수, 예산현황, 인력현황, 프로그램 현황

이에 우선, 문화시설 및 문화공간 중에서 가장 많은 전시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5) 문예회관운영현황조사에서 전시장수, 전시장면적, 전시일수, 전시장운영실적(전시장르 별 현황), 관람객수 등 광역단위로 조사/정리되어 있으나 개별 전시장에 대한 자료는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고 있어 작은미술관으로 활용가능성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음

의 전시공간에 대한 운영실태조사 및 작은미술관 적용 가능성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적용 가능한 공공공간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문예회관의 전시공간

개요

문예회관은 '지자체별로 조성된 공공공연장으로 공연장/전시장/학술행사장 등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공연장 중심의 복합문화 공연시설'을 말함[6)]

- 문화예술회관은 문예회관으로 줄여서 사용하고 있고, 1980년 광주광역시 남도예술회관이 건립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건립되기 시작하였으며, 인천문화회관, 마포아트센터, 소래아트홀, 대전서구문화센터 등 다양한 명칭을 포함하고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별표 1> 문화시설의 상세분류에서 문예회관을 공연장의 일부로 제시하고 있음

2017년 기준 전국 문예회관은 총 236개이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35개로 가장 많고 경북 25개, 경남 21개 순임



[그림 29] 문예회관 지역별 조성 현황(2017 문화시설 총람)

문예회관 내 전시공간 현황

2017년 공연예술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설특성별 전시장 보유현황은 문예회관에서 운영하는 전시장이 73.1%로 가장 많고, 중앙정부 63.6%, 공공기관 44.9% 순임

- 문예회관>중앙정부>기타(공공)>민간(대학 외)>대학

6) 건설교통부(2006), 품격 높은 문화인프라구축 및 도시문화조성방안, p37

<표 43> 특성별 전시장 보유 현황(종합)

구분		시설 수(개)	비율(%)
시설특성	전체	425	42.8
	중앙정부	7	63.6
	문예회관	174	73.1
	기타(공공)	100	44.9
	대학	8	6.6
	민간(대학 외)	135	34.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7 공연예술실태조사 참고하여 재정리

2017년 기준 문예회관은 총 236개로 이 중 미술전시공간은 303개, 운영 중인 전시장 개수는 172개로 집계되어 전시장개수 대비 운영 중인 전시장 비율이 약 56.8%로 나타남

<표 44> 문예회관 전시장운영 개수(단위: 개, %)

구분	내용	비율
문예회관 총 합계	236	-
전시장개수	303	128.4
전시장운영개수	172	56.8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7 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운영주체별 전시공간 운영현황

문예회관 운영주체는 공공기관위탁, 지자체직영, 민간위탁 등 구분되며, 공공기관위탁은 문화재단 및 시설관리공단 등이 해당됨

- 공공기관위탁은 44개, 전시장운영 개수는 32개, 평균면적 약 556㎡, 평균전시일은 97일로 나타남
- 지자체직영은 140개로 가장 많았으며, 전시장운영 개수 98개, 평균면적 약 503㎡, 평균전시일 154일로 나타남
- 민간위탁은 47개, 전시장운영 개수는 37개, 평균면적 약 986㎡, 평균전시일 298일로 가장 활발하게 전시장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문예회관 운영주체별 운영현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전체개수: 지자체직영 > 민간위탁 > 공공기관위탁
- 전시장운영 개수: 지자체직영 > 민간위탁 > 공공기관위탁
- 평균면적: 민간위탁 > 공공기관위탁 > 지자체직영

- 평균전시일: 민간위탁 > 지자체직영 > 공공기관위탁

<표 45> 문예회관 운영주체별 전시장운영 현황

운영주체	개소	전시장운영개수	평균면적(㎡)	평균전시일	비고
공공기관위탁	44	32	556.87	97	-
지자체직영	140	98	503.73	154	-
민간위탁	47	37	986.68	298	-

면적별 전시공간 운영현황

면적별 문예회관 전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100㎡ 이하 개수는 전국 9개로 전체 대비 4%로 나타났고 이 중 서울특별시는 1개, 서울특별시 제외지역은 8개로 나타남

- 평균 면적은 약 67.3㎡로 나타났으며 평균전시일수는 약 27일로 나타나 소규모 공간일수록 전시장 운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전시장 2개소 이상의 개수는 전체 66개이며 서울특별시 2개, 서울특별시 이외는 64개로 나타났고, 평균 면적은 약 1050.7㎡, 평균전시일수는 329일로 대체로 전시장 운영이 활발하게 운영됨

문예회관 면적에 따라 전시일수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소규모 문예회관의 경우 전시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전시공간 운영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음

<표 46> 문예회관 면적별 현황(단위: 개, ㎡, 일)

구분		종합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제외
100㎡ 이하	개수(개)	9	1	8
	평균면적(㎡)	67.3	94.0	64.0
	평균전시일수(일)	27.2	194.0	6.4
100㎡ 이상 200㎡ 이하	개수(개)	23	2	21
	평균면적(㎡)	159.7	145.0	161.1
	평균전시일수(일)	80.4	79.0	86.1
200㎡ 이상 300㎡ 이하	개수(개)	37	7	30
	평균면적(㎡)	249.9	240.5	252.1
	평균전시일수(일)	113.8	185.5	133.8
전시장 2개소 이상	개수(개)	66	2	64
	평균면적(㎡)	1050.7	3192.3	982.7
	평균전시일수(일)	329.6	293.0	330.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7 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3 실태 및 수요조사

개요

문예회관 내에 위치한 전시실 운영현황을 파악 후 작은미술관 전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전시실 운영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설문조사를 통해 향후 문예회관 전시실을 작은미술관으로 전환 시 운영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함

<표 47> 문예회관 전시실 실태조사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일시	2018년 2월 1일 ~ 2018년 2월 26일
조사방법	설문조사
조사대상	문예회관 내 전시실 운영 관계자
조사내용	문예회관 전시실 운영현황, 전시실 운영내용, 문예회관 전시실을 작은미술관 전환에 대한 가능성 등

조사결과

총 9기관 문예회관에서 응답을 했으며 기본정보에는 전시실 운영형태, 운영여부, 평균개수, 문예회관 평균면적, 전시실 평균면적, 평균인력, 평균예산, 방문대상, 평균방문객 등을 조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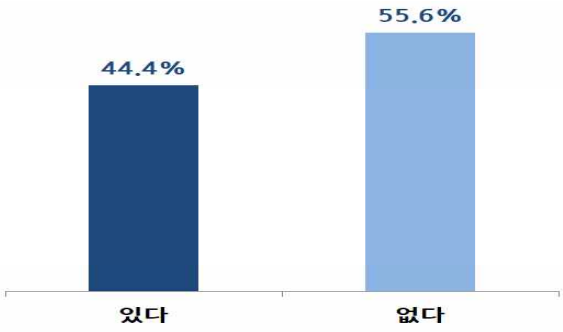
<표 48> 응답기관 기본정보

구분	내용	
응답기관	해남문화예술회관, 진주문화예술회관, 의정부문화예술회관, 양산문화예술회관, 상주문화예술회관, 문경문화예술회관, 논산문화예술회관, 나주문화예술회관, 거제문화예술회관 등 총 9곳	
운영형태	운영형태로는 공공기관 위탁이 66.7%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전시실 운영여부	모든 문예회관에서 전시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시실 평균 개수	-	
응답기관 평균면적(㎡)	7579.9	
전시실 평균 면적 (㎡)	전시실 전체	553.9
	1전시실	388.6
	2전시실	225.3

	3전시실	7.5
	사무실	99.0
	교육실	172.0
	수장고	63.0
평균 인력(명)	운영인력	전체운영인력: 9.2/전시운영: 0.7/교육담당: 1.5/시설담당: 2.7
	전시인력	전체운영인력: 1.1/전시총괄: 0.6/큐레이터: 0.2/기획보조: 0.4
평균 예산	전체운영예산	약 19억 원
	전시관련 예산	전체: 약 4000만 원/전시: 약 2300만 원/체험 및 교육: 약 1900만 원/홍보: 약 300만 원
전시실 운영 평균	전체	대관: 88%/기획전시: 12%/상설전시: 0%
	대관전시실	개수: 1개/대관횟수: 39개/운영일수: 135일
	기획전시실	개수: 1개/전시횟수: 3회/운영일수: 68일
	상설전시실	-
방문대상	응답자의 66%가 지역주민과 예술가 및 단체가 방문한다고 응답함	
방문객 평균	2016	21,073
	2017	20,215

세부결과

응답기관 중 지역 내 44%가 별도의 미술관이 있으며, 나머지 56%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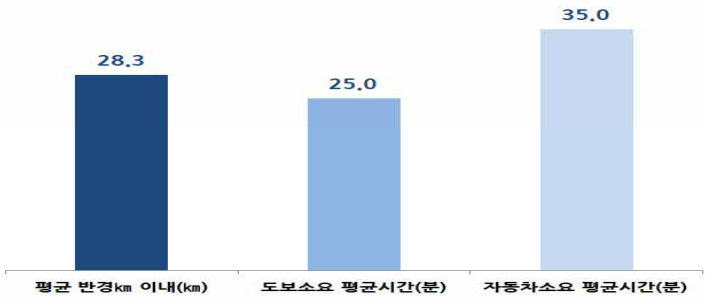
[그림 30] 지역 내 타 미술관 유무

문예회관 이외 지역 내 미술관이 있는 경우 반경 1㎞ 이내에 사립미술관이 위치한 비율이 50%이며, 자동차 30분 이내 공공미술관이 위치하고 있는 비율은 25%였으나 대체로 각 지역 내 미술전시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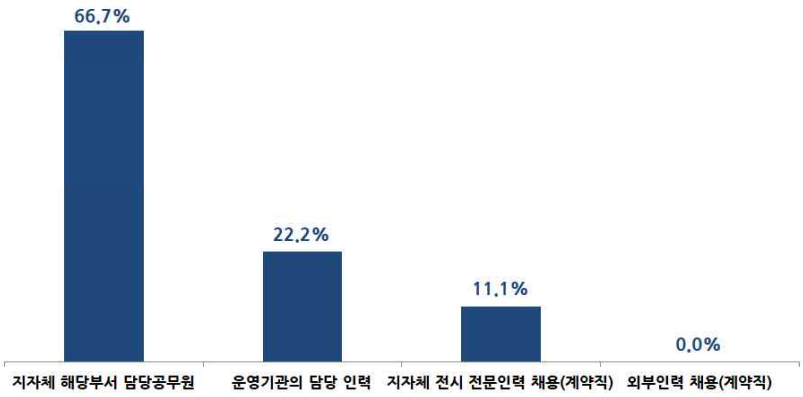
[그림 31] 지역 내 미술관 위치

문예회관 전시실 및 미술프로그램을 관람 및 이용하는 주민은 평균 28㎞이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 도보 25분, 자동차 35분이 소요되어 근거리가 아닌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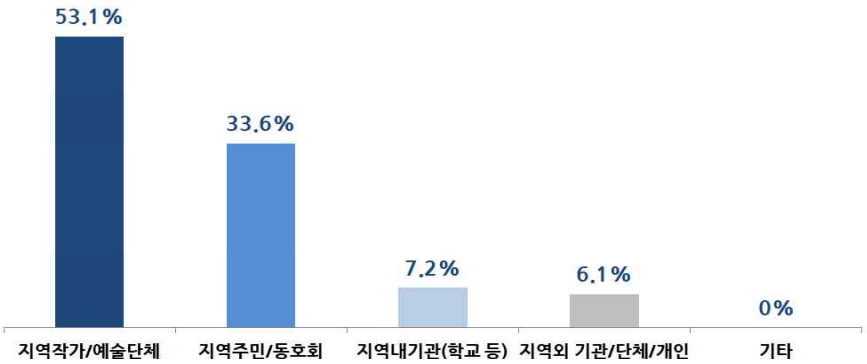
[그림 32] 전시실 및 미술프로그램 관람객 평균 거리 및 소요시간

문예회관 전시실 운영인력 형태를 살펴보면 지자체 해당부서 담당공무원 관리가 66.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운영기관(단체)의 담당 인력이 22.2%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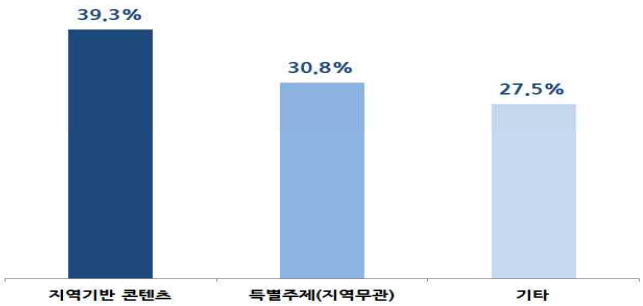
[그림 33] 운영인력 고용형태

전시실 대관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작가 및 예술단체 비율이 53.1%로 가장 높았으며, 지역주민 및 동호회 33.6%, 지역 내 기관(학교 등) 7.2%, 지역 외 기관·단체·개인 6.1% 순으로 나타나 지역 내 거주자들의 대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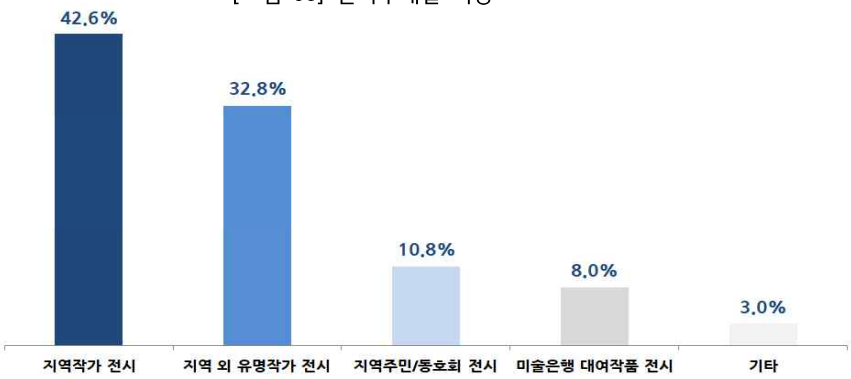


[그림 34] 전시실 대관비중

전시주제는 지역기반 콘테츠가 평균 39.3%로 가장 높았으며, 전시구성별 비중은 지역작가 전시가 42.6%, 지역 외 유명작가 전시 32.8%, 지역주민 및 동호회 전시 10.8%, 미술은행 대여작품 전시 8.0%, 기타 3.0% 순서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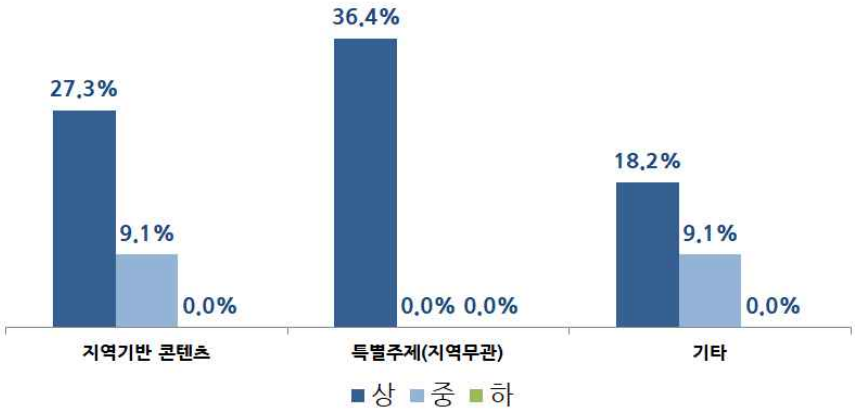


[그림 35] 전시주제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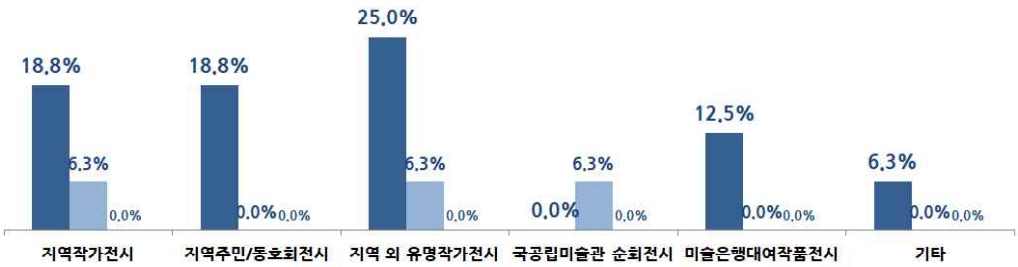
[그림 36] 전시구성별 비중

전시주제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지역기반 콘텐츠에 만족(상)한다는 응답이 27.1%, 보통(중)이라는 의견이 9.1% 불만족(하)이라는 의견이 0%로 나타났으며, 특별주제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상)한다는 의견이 36.4%로 가장 높은 만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획전시 등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보여짐



[그림 37] 전시주제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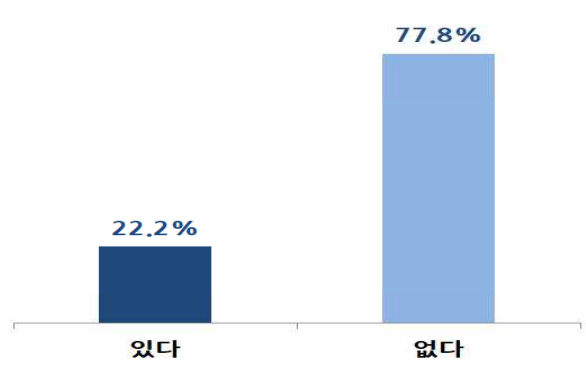
전시작가 및 전시내용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지역 외 유명작가전시가 전체 평균 25.0%로 가장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8.8% 지역작가전시, 지역주민/동호회전시 순임



[그림 38] 전시구성별 만족도

대부분의 문예회관의 전시장에서는 전시 외 미술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 22.2%, 운영하지 않는 기관이 77.8%로 나타남

- 이는 대부분 전시장을 대관 88%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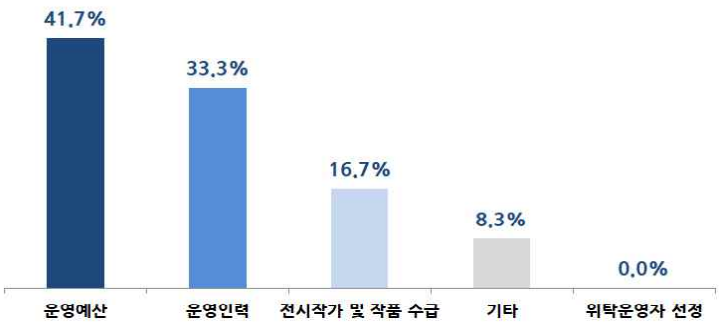


[그림 39] 전시 외 미술관련 프로그램 운영

<표 49> '있다'라고 응답한 기관 중 프로그램명 및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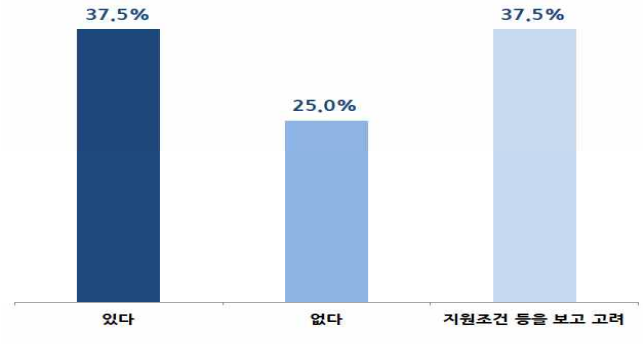
구분	내용
운영 프로그램명	해설이 있는 전시감상 교사 초청 설명회 큐레이터 직업체험 예술감상교육 다문화 미술학교 신진작가 공모전 체험수업
운영성과	해설이 있는 전시감상을 통하여 큐레이터의 기획의도 및 작품설명에 대한 이해도 높임 교사 초청 설명회를 통해 전시 전반에 걸친 홍보 및 미술교육 감상 부분에 작은 도움이 되었음 큐레이터 직업체험은 중고등학생들의 진로선택과 궁금증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됨 예술감상 기회증가, 문화예술 향유 방식의 질적 향상 도모

전시실 운영에 있어 어려운 점은 운영예산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운영인력, 전시작가 및 작품수급에 대한 응답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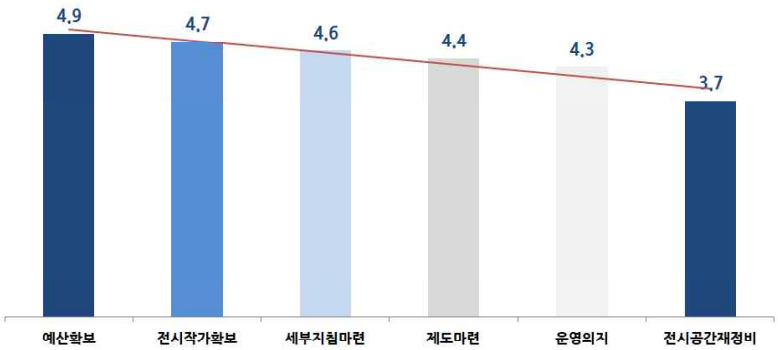
[그림 40] 전시실 운영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

문예회관 전시실을 작은미술관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의향이 있다는 질문에는 '있다' 37.5%, '지원조건 등을 보고 고려' 37.5%로 75%이상이 작은미술관으로 전환/운영에 대해 긍정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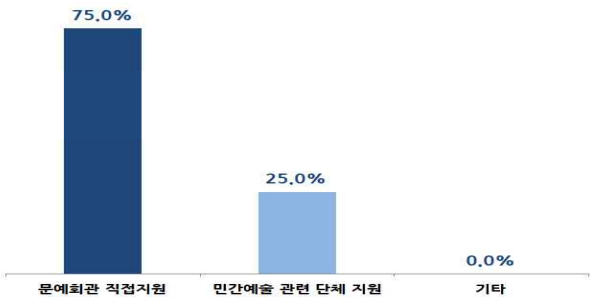
[그림 41] 작은미술관으로 전환 의향

작은미술관 전환 시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는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나타나며, 그 외에 전시작가확보, 세부지침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42] 작은미술관으로 전환 시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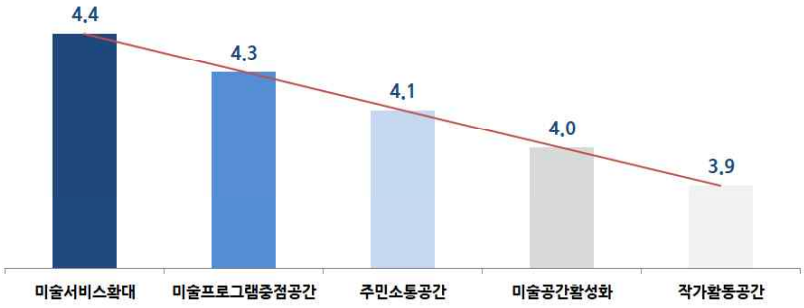
작은미술관 전환 시 지원수혜 주체에 대해서는 문예회관에서 전시 및 기획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직접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3] 작은미술관 전환 시 지원수혜 기관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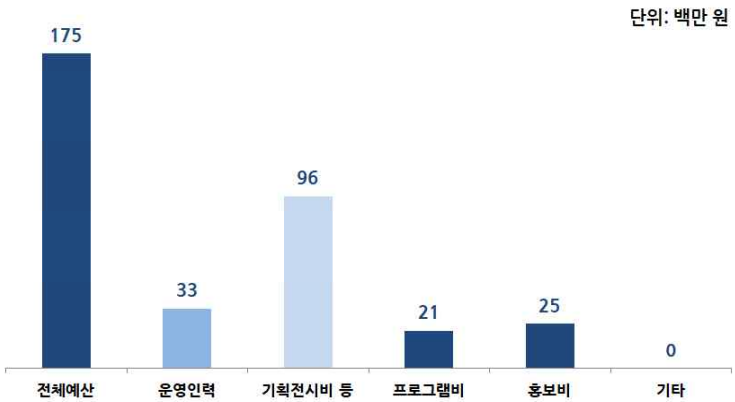
작은미술관의 운영 방향 및 역할은 '시각예술의 중요성 및 미술서비스의 양적 확대', 지역기

반 전시 및 미술프로그램 운영 중점 공간, 생활미술의 실현 거점이자 주민 소통 공간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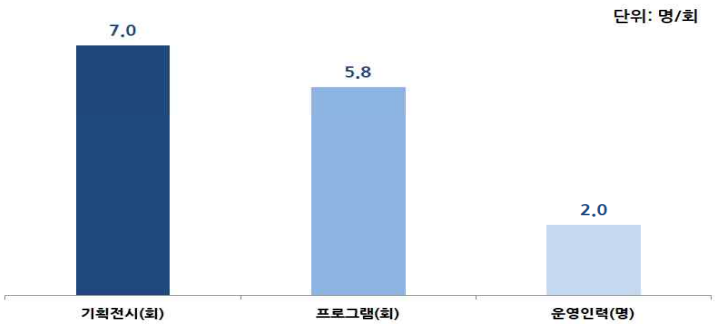
[그림 44] 작은미술관 운영 방향 및 역할

문예회관을 작은미술관으로 전환 시 운영하는데 1년 간 적정 예산으로는 평균 175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기획전시비 96백만원, 운영인력 33백만원 순서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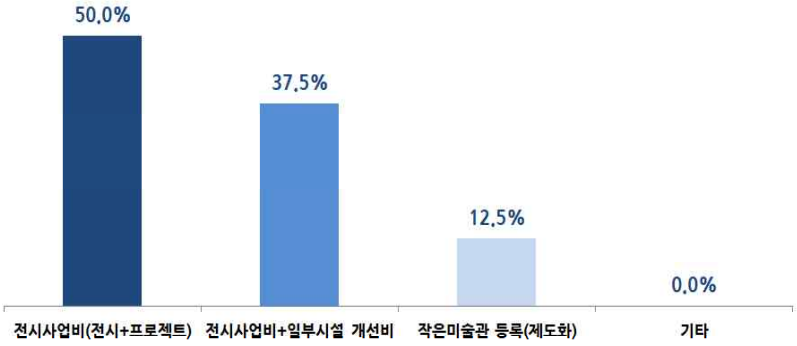
[그림 45] 작은미술관으로 전환 운영 시 1년 간 적정 예산

문예회관을 작은미술관으로 전환 운영 시 1년 동안 적정 기획전시 평균 회수는 약 7회, 교육/체험 등 운영 프로그램은 약 5회로 나타났으며 운영인력은 2명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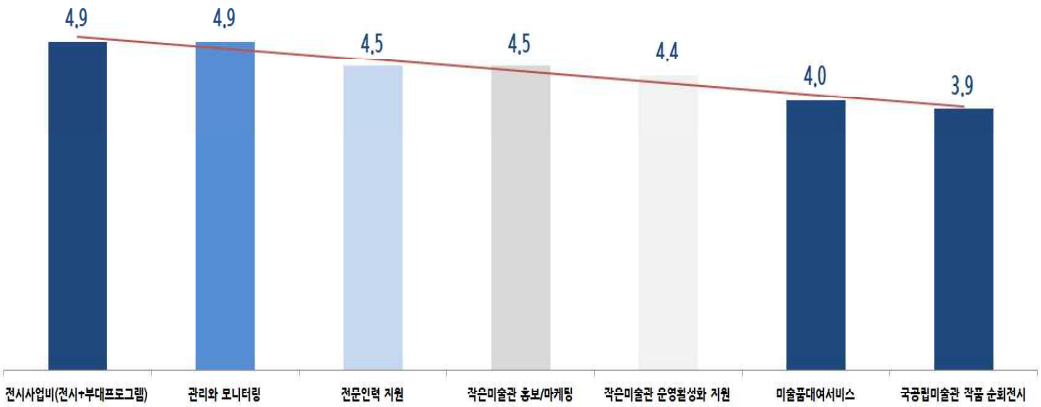
[그림 46] 작은미술관으로 전환 운영 시 적정 인력 및 프로그램/전시 횟수

작은미술관으로 전환 운영시 가장 바람직한 사업지원 형태는 '전시와 프로젝트 비용 지원'이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부시설 개선비 지원 필요 37.5%, 작은미술관 등록지원 12.5%로 나타남



[그림 47] 작은미술관으로 전환 운영 시 바람직한 사업지원 형태

전시실 운영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전시사업비 마련'과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왔으며, 그 외에도 전문인력 지원, 작은미술관 홍보 및 마케팅이라는 항목도 높은 비중을 차지함



[그림 48] 작은미술관으로 전환 운영 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추가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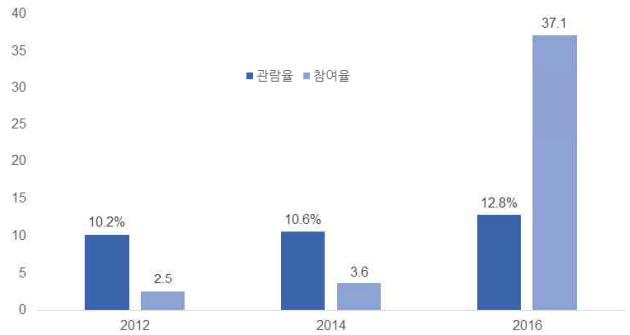
" 작은미술관을 운영함에 있어 문예회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예산운영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문예회관은 전시실 예산운영 보장이 이루어져야 전시사업 활성화, 홍보 및 마케팅, 전시 보조 인력 확충, 예술교육 활성화 등이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03. 사업확대 필요성

1 미술공간의 양적 확대 필요

미술전시 관람률 지속상승

문화향유실태조사결과 2016년 기준 미술전시 관람은 12.8%로 저조하나 매년 미술전시 관람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에는 실제 문화예술행사 참여경험(미술 34%) 및 문화예술교육(3.1%)에서 미술전시 참여비율이 1위를 차지함



[그림 49] 미술전시 관람률과 참여율 변화

문화소외지역의 작은문화에 대한 수요증가

작은미술관 방문객 조사결과 시민들이 가까이 자주갈 수 있는 작지만 특별한 작은미술관이 주는 정서적/문화적 효과에 공감하고, 미술에 대한 이해와 저변확대를 위해서 작은 지역에서부터 점진적인 미술관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함



[그림 50] 작은미술관 방문객조사(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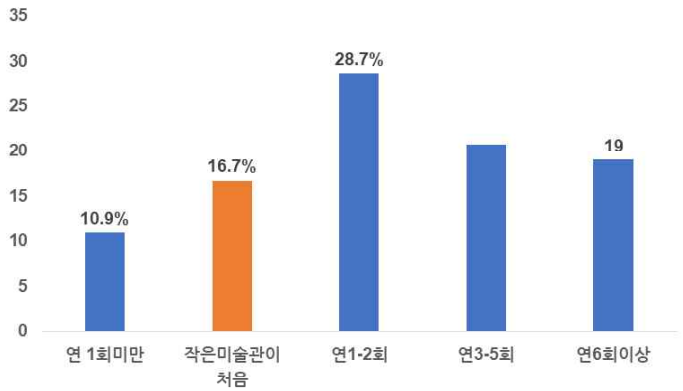
특히 작은미술관은 지역의 부족한 문화시설을 대체할 뿐 만 아니라 전시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의 개성을 드러내며, 지역주민들이 세상과 소통하고 지역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함

"문화소외지역에서 이렇게 좋은 문화공간이 생기고, 문화프로그램을 상시로 접할 수 있어 행복하다"
"동네에 작은미술관 하나는 필수다. 안목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문화라는 것은 접근성이 우선이라 생각된다. 항상 박물관이나 특정 장소가 아닌 지역 내 미술관은 새로운 문화적 요소라 생각된다"
"낙후된 동네를 문화동네로 탈바꿈 할 수 있을 것 같고, 주민의 왕래가 많아졌다"(작은미술관 방문객 의견)

작은미술관을 통한 미술 및 미술관에 대한 관심 증대

작은미술관에 대한 방문객 만족도가 매우 높고, 작은미술관 경험을 토대로 다른 미술관에 대한 관심 및 방문의향이 상승되고 있어 작은미술관의 문화소외지역의 미술향유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작은미술관 방문객의 16.7%는 작은미술관 방문이 미술관 방문의 첫 경험이고, 방문객 70% 이상이 전시/관람을 목적으로 방문하고 있어 지역에서 특히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전문미술관의 필요성 대두됨
- 문예회관 전시공간 실태조사결과, 문예회관을 중심으로 1㎞ 이내에 사립미술관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공공미술관은 75% 정도가 자동차로 30분 이상에 위치하며, 문예회관 전시공간 이용객 대부분이 도보 25분 이상 거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술향유에 대한 지역민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생활문화권 내 전문미술관(미술공간)이 절실히 필요함



[그림 51] 미술관 방문빈도(2016조사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술관에 갈 기회가 별로 없지만 작은미술관이 미술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미술에 대해, 지역에 대해 작은 관심이라도 가질 기회가 된다"
"여가시간이 별로 없는 사회생활로 선뜻 미술관 관람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근처에 크지 않지만 잠시동안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미술관이여서 매우 신기하고 좋았다. 여러 가지 다양한 미술관에 지속적으로 가고 싶다" (작은미술관 방문객 의견)

2 미술전시공간 운영 활성화 필요

미술전시공간 운영 난조

문예회관 전시공간 운영실태 조사 결과, 전체 전시장 303개 중 운영되고 있는 전시장은 56.8%인 172개이며, 전시실의 88%가 대관 형태로 운영되고 운영인력은 1.1명으로서 실제 전시장 운영 시설관리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공공기관 위탁 및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될 때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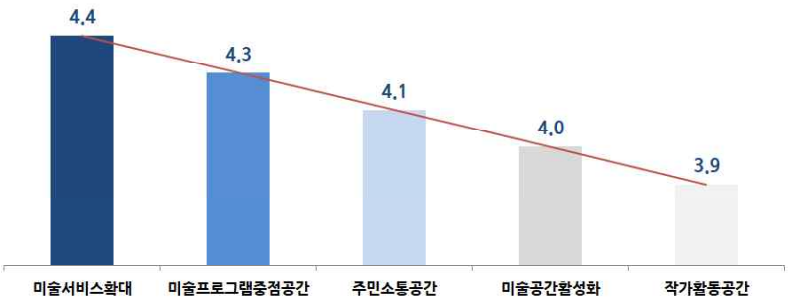
그러나 문예회관 전시공간 운영실태 조사결과 방문객은 지역주민 및 예술단체 등이 66% 비중을 차지하고 평균 년 간 2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미술전시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시시설 운영에 있어 어려운 점으로는 운영예산, 운영인력, 전시작가 및 작품수급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전시관련 예산은 평균 약 4천만원(인건비 미포함)/년으로 전시 2천3백만원, 교육 1천9백만원, 홍보 약 3백만원이나 조사결과 적정한 수의 기획프로그램 7회, 교육/체험프로그램 5회 등 운영하기 위한 필요예산은 1억7천5백만원으로 나타나 현실과 이상간의 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음

작은미술관을 통해 운영활성화 수요

문예회관 전시실의 작은미술관 전환 수요는 약 75% 이상으로 작은미술관 사업을 통해 전시실 운영활성화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행사항으로 예산확보, 전시작가 확보, 세부지침마련 등을 꼽고 있음

사업지원은 문예회관에서 직접 전시 및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희망하고 있어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욕구가 강하며, 이를 통해 시각예술의 중요성 및 미술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지역기반 전시 및 미술프로그램 운영중점 공간으로서 역할을 실현하고자 기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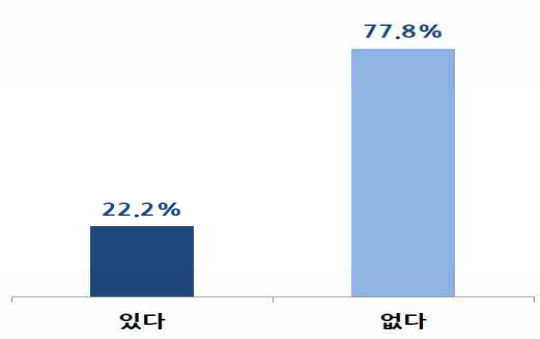


[그림 52] 작은미술관 역할 기대

유휴(운영이 저조한) 미술공간의 활성화 기반 마련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이외에도 지역에 위치한 다수의 미술공간이 운영이 어려워 유휴공간화 되고 있는 실정으로 새로운 미술공간을 조성/확충하기에 앞서 지역 미술공간에 대한 운영 내실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대부분 전시장을 대관 운영하고 있어, 실제 전문미술공간으로서 지역의 미술관람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
- 작은미술관 방문객 조사결과, 가까운 곳에 보다 큰 규모의 미술공간과 다양한 주제의 전시 및 미술 프로그램 등에 대한 수요가 많음



[그림 53] 전시 외 미술관련 프로그램 운영

각 부처별로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공간, 창조공간, 지역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실제 조성이후 운영관리실태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이를 위해 지역미술공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일차적으로 희망하는 공간을 대상으로 작은미술관으로 전환하여 운영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작은미술관 SMALL MUSEUM

4 작은미술관 확대대상 및 운영기준

Ⅳ. 작은미술관 확대대상 및 기준

1 작은미술관 확대 대상
2 작은미술관 사업운영

01. 사업확대 대상

1 작은미술관 개념

기본개념

작은미술관은 특별한 법적근거가 없으나 지자체 및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공립문화시설의 성격을 가지면서 등록미술관과 달리 등록요건이 없고 생활권 내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한 지역 내 유휴시설 및 공간활용을 원칙으로 미술 전시/관람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미술관의 역할을 담당함[7)]

<표 50> 등록미술관, 화랑, 작은미술관 특성 비교

구분	등록미술관	화랑	작은미술관
법적근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2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없음
운영주체	국립: 중앙정부 공립: 각 지자체 사립: 개인/민간	개인사업자	지자체 문화재단
기능	수집, 관리, 전시, 보존, 조사, 연구, 교육 등	전시, 판매	전시, 교육, 연구
성격	공공적	상업적	공공적
등록요건	• 제1종(제2종) - 100㎡이상 전시실 또는 2,000㎡ 이상의 야외 전시장(82㎡ 이상 전시실) - 수장고(수장고) - 사무실 또는 연구실 -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 화재/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 100점이상(60점 이상) - 학예사 1명 이상(1명 이상)	없음	• 82㎡미만 면적 권장 • 생활권 내 공간 • 기존시설 활용

■ 작은미술관 개념
- 작은미술관은 문화소외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비용, 시간,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상설 소규모 미술관
- 생활 속에서 시각예술 체험을 통해 문화 수요에 부합하고 미술에 대한 일반의 관심과 친밀감을 높여주는 공공문화시설
- 등록미술관이 아니지만 지역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미술전시 공간을 추구, 미술관으로서 본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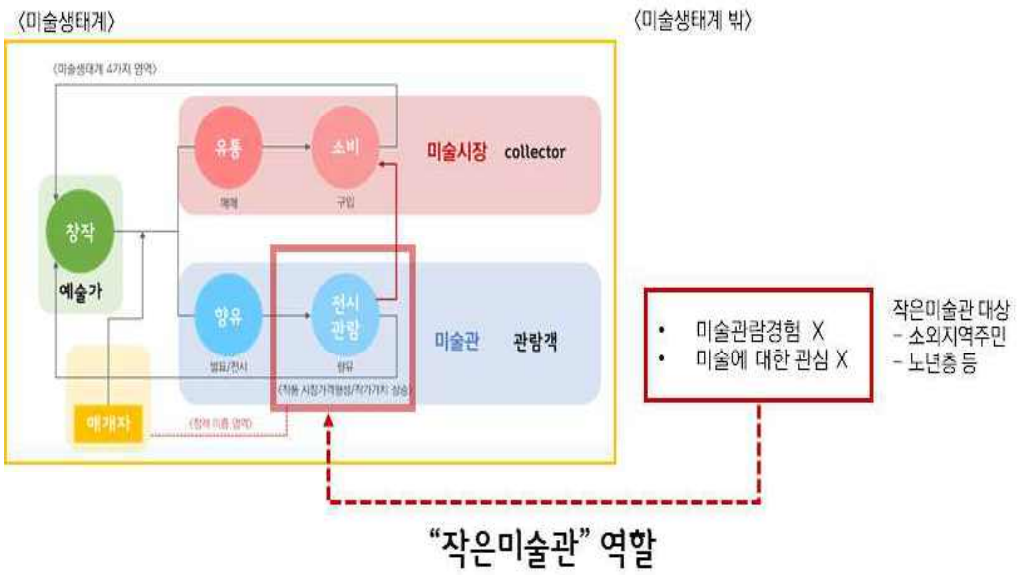
7)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7), 작은미술관모형개발 연구용역, p79

작은미술관의 역할

작은미술관은 현재 방문객조사결과에서 나타나듯 미술관 방문경험이 없거나 미술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술에 대한 관심증대와 미술관 방문수요를 높여주는 견인차 역할을 하며, 이는 곧 미술생태계 선순환을 가능하게 함

- 미술생태계 선순환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가 되는 요소인 미술전시 및 작품 관람 기회가 누구에게, 많이, 언제나, 항상 있어야 된다면 작은미술관은 생활 속에서 특히 자연스럽게 그 역할을 담당하는 가장 적절한 공간이 될 수 있음

전시관람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빈도수가 많고 전시관람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작은미술관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 역할 및 기능도 중요하지만 미술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기반 콘텐츠를 담는 전문미술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그림 54] 작은미술관 역할

작은미술관 개념확장

작은미술관의 기본개념 및 수행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방법으로 지역 내 유휴시설 및 공간을 대상으로 새롭게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국가정책사업의 하나로 공공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된 전시기능을 갖춘 공간 및 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공간을 활용할 필요도 있음

- 작은미술관은 비용, 시간,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작지만 친밀한 생활권 내 미술관(수장고, 법적 시설 등을 갖춘 등록미술관)이 아닌, 전시기능을 갖추고 프로그램 운영이 중심이 되는 미술

공간으로서 소규모 미술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규모(예: 50㎡이상 등, 작은도서관 33㎡이상) 기준을 적용함

<표 51> 작은미술관 개념 확장(안)

구분	기존	변경
사업성격	법적 시설을 갖추거나(등록미술관) 시설 활용방안이 아닌 지역별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이 중심인 사업	등록미술관이 아닌 지역기반 미술전시를 목적하는 시설 및 공간 운영/확충사업
조성위치	문화소외지역 중심	시각예술소외지역 중심
공간조성	지역 내 유휴공간이나 기존 공간 활용	지역 내 유휴공간이나 기존 전시공간 활용
조성규모	20~25평의 소규모(등록미술관보다 작은 규모 권장: 82㎡~100㎡)	신규조성 : 20-25평 소규모 기존공간활용: 규모제한 없음(최소기준 적용)
주요기능	전시와 교육(보존과 수집은 X), 미술창작과 미술향유(미술소비는 X)	
역할	시각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해 미술에 대한 관심과 친밀감 증진	

미술관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시공간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 공간 및 시설에 대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작은미술관 개념을 확장하여 작은미술관으로 등록하여 소규모전문미술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필요함

- 작은도서관은 공공/사립작은도서관으로 구분되며, 사립작은도서관의 경우 공간의 형태 및 조성방법(신규 단독/기존시설의 부속시설), 운영주체 등에 규정 없이 작은도서관 취지와 기준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주체가 신청하고 현장실사 등을 거쳐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함으로써 운영/인력지원 등 공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음



[그림 55] 작은도서관 등록절차

2 작은미술관 확대 사업대상

작은미술관 유형

작은미술관 사업을 통해 조성된 작은미술관은 현재 조성방법 및 운영내용에 따라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음

- 우리미술관의 경우 독립된 공간인 작은미술관을 중심으로 교육관, 오픈스튜디오, 작가 레지던스 등 관련 시설 및 공간을 연계하여 미술전시를 비롯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유형으로 구분하면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건물형태는 독립형, 운영형태는 확장형으로 구분 가능함

<표 52> 작은미술관 유형

구분			비고
지역	도시지역		재정자립도 30%를 기준 우선 선정 대상 가능(현재 기준없음)
	농어촌지역		
건물형태	독립형		독립된 건물을 작은미술관으로 활용
	부속형		기존 시설의 일부를 작은미술관으로 활용
	연계형		여타 사업으로 조성된 공간활용
운영내용	기본형	지역형	지역예술가/지역기반 작품 전시 및 지역주민교육 중심 프로그램 기획 운영
		예술형	지역 관계없이 작품 기반 기획전시 중심으로 운영
	확장형		미술공간을 중심으로 공간을 확장하여 운영

작은미술관 확대 대상

작은미술관 사업 확대 대상은 작은미술관 유형 구분에서 연계형에 해당되는 시설 및 공간으로서 지역에 위치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공간조성 사업으로 조성된 공간을 포함하여 타 부처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중 전시공간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 및 공간에 해당됨

- 우선 지역문화시설 내에 전시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전시공간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점차 지역에 위치한 여러 전시공간으로 확대하여 지원/운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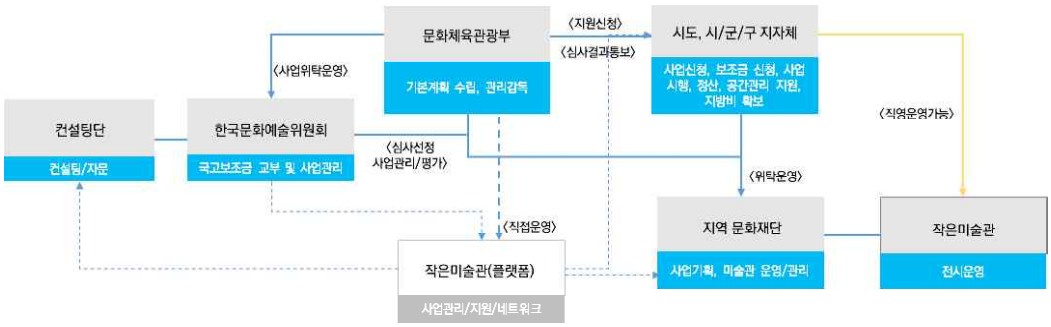
[그림 56] 작은미술관 사업 확대 대상

02. 사업운영 기준

1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체계 및 주체별 역할

작은미술관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시/도, 시군과의 협력 관계 속에서 지자체가 직접운영하거나 지역문화재단 등 공공기관 및 전문민간단체에 위탁운영 형태로 추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작은미술관 플랫폼 운영은 문화체육관광부 직접 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함



[그림 57] 작은미술관 추진체계도

작은미술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지역문화재단, 작은미술관 등 기관별 역할은 다음과 같으며, 작은미술관 양적 확대 및 질적 관리단계에서 작은미술관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업운영관리 및 작은미술관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

<표 53> 운영주체별 역할

기관	역할	비고
문체부	기본계획 수립, 사업 총괄 관리감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모집, 선정, 관리, 교부금 교부, 모니터링, 평가	전담센터조성 및 전담조직 신설 검토
지자체	사업신청, 보조금 신청, 사업시행 및 정산, 작은미술관 지원(지방비 확보/공간 등)	지자체 직영 운영 가능
지역문화재단	미술관 운영계획 수립, 미술관 운영/관리	내부 인력을 전문기획자로 활용 가능
작은미술관	미술 전시, 교육 등 운영	-
작은미술관(플랫폼)	작은미술관 사업 및 운영 관리/지원, 네트워크, 인력양성 등 작은미술관 사업 총괄	향후 작은미술관 양적/질적 관리 단계

2 사업규모 및 적용기준

사업규모

시범사업을 통한 확인된 작은미술관의 긍정적 효과인 미술에 대한 관심 및 타 미술관에 대한 방문의향 증가, 지역커뮤니티 및 시각예술향유 증진 등의 성과공유 및 확산을 위해 미술관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양적 확대를 우선 목표로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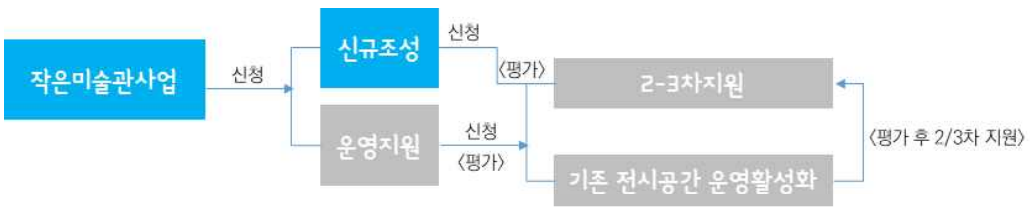
- 현재 17개 시 도 중 2개(울산, 세종)지역, 230개 지자체 중 143개 지역에 미술관이 전무한 실정으로 매년 10개 조성을 목표로 5년간 50개 조성을 1차 목표로 설정함[8)]
- 작은미술관 장기계획 차원에서 5년간은 작은미술관 양적 확대를 목표로 설정하고 향후 5년은 신규 작은미술관 추가지원은 감소하면서 기존 작은미술관 유지/관리를 통한 질적 성장 도모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2차 목표로 설정함



[그림 58] 사업목표 및 사업규모

적용기준

작은미술관 조성 사업 및 운영지원 사업은 시각예술소외지역 대상, 공모를 통하여 진행하며 공모 신청은 1) 신규조성 2) 운영(활성화)지원으로 구분하여 진행함



[그림 59] 작은미술관 공모유형

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작은미술관모형개발 연구용역, 2017, p89

운영(활성화)지원의 대상을 현재 시범사업으로 조성된 작은미술관을 확장하여 기 조성된 전시공간(문화원/문예회관 등)을 포함함

- 신청자격은 문예회관 등 문화시설을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문화재단 또는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 등이 운영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안 검토 가능함(현재 프로젝트기반 운영비 지원 사업은 법인/단체와 문예회관/문화의집 기관 등 대상으로 이루어 짐)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현재)

- 대상지 내 유휴공공공간을 보유/운영하는 지자체 혹은 공공기관과 협약(공간협조 및 예산 편성 등 위탁운영 관련)을 체결한 광역 또는 기초문화재단 혹은 문화예술분야 비영리 법인
- 대상지 내 자체 보유/운영하고 있는 유휴공간이 있는 광역 또는 기초문화재단 혹은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
- 민간(개인) 소유공간이거나 문화원/문예회관 소속 전시관, 문화의집, 미술전시실 등 문화공간으로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간, 또는 임시 가설 공간 조성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개선)

- 대상지 내 유휴공공공간을 보유/운영하는 지자체 혹은 공공기관과 협약(공간협조 및 예산 편성 등 위탁운영 관련)을 체결한 광역 또는 기초문화재단 혹은 문화예술분야 비영리 법인
- 대상지 내 자체 보유/운영하고 있는 유휴공간이 있는 광역 또는 기초문화재단 혹은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
- 민간(개인) 소유공간이거나 문화원/문예회관 소속 전시관, 문화의집, 미술전시실 등 문화공간으로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간 중에서 작은미술관으로 등록한 공간을 대상으로 공공기관과 협약(공간협조 및 예산 편성 등 위탁운영 관련)을 체결한 광역 또는 기초문화재단 혹은 문화예술분야 비영리 법인인 경우

3 지원규모 및 항목

지원방향 및 형태

작은미술관 조성 사업 및 운영지원 사업의 사업비 지원규모는 신규조성과 운영활성화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함

-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작은미술관 신규조성일 경우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며, 재지원일 경우는 운영비(인건비, 프로그램 기획/전비 비 등)를 지원함
- 지역 내에 위치한 문화시설 내 전시공간 등을 활용하여 작은미술관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운영비(기획인력 인건비, 전시/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비, 부대비용 등)를 지원하며 이때 정규인력 인건비, 여비, 시설관리비 등 경상비를 제외하여 지원함

<표 54> 사업비 지원(안)

구분	신규조성	운영비지원	
		작은미술관(재지원)	기존전시공간(작은미술관등록)
시설조성비	작은미술관조성사업비	-	기조성된 전시공간(타 사업)
운영비	작은미술관사업비+지자체 매칭	작은미술관사업비+지자체(2/3차 매칭)	지자체(인건비+시설관리비)
활성화사업비	-	-	작은미술관사업비지원(사업비)

예산규모 및 내용

현재 작은미술관사업으로 예산지원은 시설조성비는 지자체에서 마련하고 운영비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범위는 전시기획비용으로 전시기획 범위 내에서 전문기획자 인건비만 지원 가능한 형태임

작은미술관 및 문예회관 등 전시공간에서 전시/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홍보비 등 예산 부족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작은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적정 예산 및 내용을 지원함

- 1차 7천만원, 2차 4천5백, 3차 2천5백만원이며, 지자체 매칭을 고려하면 1차 1억 4천, 2차 9천, 3차 5천만원으로 운영담당자가 작은미술관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적정 예산과 차이가 있음

작은미술관 운영자 및 문예회관 전시실 운영자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된 적절한 운영예산은 1억~1억 5천만원(작은미술관 운영자 1억~1억5천만원, 문예회관 운영자 1억~1억7천오백만원)이며 실제 필요한 예산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55> 작은미술관 운영시 필요한 예산내역

구분	내용	작은미술관담당자	문예회관전시담당자
시설조성비	지역내 유휴공간 활용이 원칙으로 건물 및 공간 리모델링 비용 소요	3~5,000천만원	-
인건비	전문기획자	300만원/월	3,300만원/년
	시설관리/행정업무 담당	150~180만원/월	-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담당	200만원/월	-
사업비	전시 기획비	1~3000만원/회	9,600만원/7회
	프로그램비		2,100만원/5회
	홍보비		2,500만원
	작품 설치비(운송비, 보험료, 설치비)		-

* 각 항목에 대한 필요비용은 관계자 인터뷰 및 설문조사에 근거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사업의 예산지원은 현재 사업기준에 따라 일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작은미술관 규모 및 사업량, 지자체의 예산매칭 역량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 등을 개선함

- 기존 문화시설 내 전시공간을 작은미술관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전시실의 크기 및 개수, 운영프로그램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 검토함
- 시각예술향유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미술관을 확충하고자 하는 작은미술관 취지를 살려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 검토함(예: 재정자립도 30% 기준으로 30% 미만은 총 사업비의 70% 국비지원)

<표 56> 현재 작은미술관 예산 항목

구분	현재 예산	지원비용	추가 보완 사항
시설	지자체 마련	-	
운영비	50% 매칭 지원 인건비+사업비 포함 -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비용 - 전문기획자 인건비 -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관련 비용	35~40백만 원 (총 70~80백만 원)	추가 인력 인건비 지원 확충 - 보조기획자, 운영/관리 인력, 해설사 등 작은미술관 관리/홍보 관련 비용 - 작은미술관 컨설팅, 평가, 운영자 협의회 운영, 워크숍개최, 홈페이지 유지관리, 홍보/마케팅 등

<표 57> 작은미술관 예산 편성(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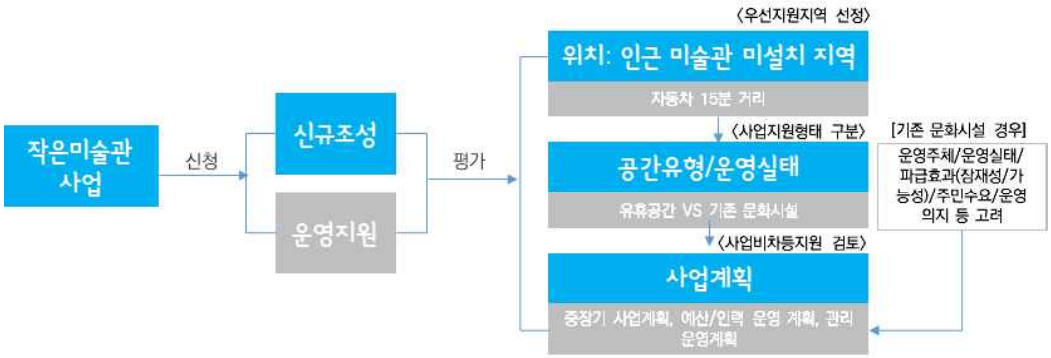
구분	예산지원항목	지원규모
시설조성 및 시설관리비	지자체 자체 마련	-
인건비	작은미술관 큐레이터 지원사업(전시큐레이터, 체험교육기획자, 보조기획자 지원)	1/2/3차 균등 5-6천만원/년 (총 1억 ~1.2억) - 전시실 크기 및 개수 등에 따라 차등 지원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지원(30% 미만 전체 사업비 70% 지원)
사업비	작은미술관 프로그램 기획비 지원(전시기획, 교육기획 별도로 예산 지원)	
운영활성화	작은미술관 운영활성화(작은미술관 모니터링/운영평가, 홈페이지 유지관리, 작은미술관 운영자 협의 조성,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등) 미술관 운영관리 방안 교육프로그램(큐레이팅 방법, 미술전시 해설교육, 시각예술관련 기본소양 교육 등 지원)	

4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 선정기준

작은미술관 조성 사업 및 운영지원 사업 대상선정은 1차적으로 미술관 미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조성하고자 하는 공간유형이 지역 내 유휴공간을 작은미술관으로 조성하는 형태와 기존 문화시설(대안공간) 내 전시공간을 작은미술관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한 것인지 구분하여 중장기적 측면에서 사업계획 마련 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함

- 전국 230개 시/군/구 지자체 중 미술관 미조성 지역 총 143개를 1차 사업대상으로 설정함
- 기존 문화시설 내 전시공간을 작은미술관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현재 전시공간(전시실 및 전시장) 운영실태(운영형태, 전시내용, 관람객 현황, 주변지 미술관 설치 유무, 전문미술관으로서 기능 가능성 등)을 검토함
- 사업계획검토 단계에서는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유무, 예산/인력 투입계획의 적절성, 운영관리 계획 수립 유무 등을 판단함



[그림 60] 선정단계 및 검토내용

<표 58> 사업대상선정 단계 및 검토내용

검토단계	검토내용	비고
설치 지역	미술관 미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미술관이 있는 경우 기존 미술관과의 거리(기준: 자동차 15분)를 고려하여 선정	우선 설치 지역 대상
공간형태/운영실태	지역 내 유휴공간을 작은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운영하는 것과 기존 문화시설 내 전시공간을 작은미술관으로 전환 운영하는 것을 구분 검토 - 기존 전시공간 활용은 현 전시공간 운영 실태 등을 검토하여 활성화정도를 기준(소규모/대관70%이상/90일미만/전문인력 1명 이하/예산 2000만원 이하 등 기준)	기존 시설의 전환 시 기대효과 중점
사업계획	작은미술관 중장기계획수립여부(예산/인력 투입계획, 운영관리계획 등 포함) 검토하여 지역미술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유도	중장기 관리운영여부 중점 검토

운영일수 기준

작은미술관은 지역의 소규모 전문미술관을 목표로 최소 기획전시 개최 및 운영일수를 규정함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개방일수)기준 연간 90일 이상 개방 제시, 2017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 조사된 미술관의 평균 운영일수 280일로 나타남
- 문예회관 내 전시실 운영일수 조사 결과(2017년 전국문화기반 시설 총람) 면적에 따라 운영일수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시설을 작은미술관으로 전환하는 경우 역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90일 이상 개방을 기준으로 제시함

<표 59> 문예회관 전시실 면적별 운영일수 현황(단위: 개, ㎡, 일)

구분		종합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제외
100㎡ 이하	평균면적(㎡)	67.3	94.0	64.0
	평균전시일수(일)	27.2	194.0	**6.4**
100㎡ 이상 200㎡ 이하	평균면적(㎡)	159.7	145.0	161.1
	평균전시일수(일)	80.4	79.0	86.1
200㎡ 이상 300㎡ 이하	평균면적(㎡)	249.9	240.5	252.1
	평균전시일수(일)	**113.8**	185.5	133.8
전시장 2개소 이상	평균면적(㎡)	1050.7	3192.3	982.7
	평균전시일수(일)	329.6	293.0	330.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7 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운영인력 기준

작은미술관은 중장기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설 및 전시/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중심으로 인력계획, 예산/투자계획, 평가/모니터링/관리 등을 포함함

특히 작은미술관이 전문미술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전문기획 인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전문인력 배치/활용할 수 있는 인력운용계획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 인력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 작은미술관 운영에 있어 1-4명 정도의 인력을 활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1명의 기획인력이 전담하고 행정/해설인력을 보조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작은미술관 운영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예산확보 다음으로 운영인력을 꼽고 있음
- 문화예술회관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1명의 인력이 전시장 운영을 담당하면서 기획/운영/행정 등 모든 관련 사무를 총괄하고 있어 실제 전시/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기획전문인력과 예산 기준으로 기획전시 개최 및 프로그램 수는 전시기획 최소 3회, 프로그램

3회를 제안함

- 작은미술관 현재 기획 전시는 각기 다르나 최소 2회에서 최대 10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예회관 전시담당자의 의견 역시 미술관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7회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음
- 교육 및 아카이브 등 프로그램은 현재 작은미술관에서 최소 2회에서 최대 12회까지 단기/중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예회관 담당자 의견조사 결과 5회 정도가 적정하는 의견이 있음

<표 60> 작은미술관 운영계획(안)

구분	내용	비고
기본원칙	전문미술관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가기능은 지역/공간여건에 따라 운영	-
운영일수	최소 3회 이상 기획전시 개최/프로그램 3회 이상 진행 최대 280일 오픈 미술관을 권장하나 최소 90일 이상 유지할 것	-
운영인력	작은미술관 운영(상근지원 1인 이상) 전문기획자 1인 이상 도슨트 및 해설사 1인 이상	상근직원 지자체 지원 전문기획자 중앙 지원 도슨트/해설사 지역주민 활용 가능
운영비	프로그램 기획비: 2,000만 /회 (설치비, 운송비, 작가보수(fee) 포함) 인건비: 5,500만 원/년 - 전문기획자 1인 기준: 3,000만원/년 - 상근지원 1인 기준: 2,160만원/년 - 도슨트/해설사: 실비지원(360만원/년) 작은미술관 운영비: 800~1,000만원/년	프로그램 기획비 중앙지원이나 사업 종료 후 사업 지속 운영위한 별도 지자체 지원 필요 인건비의 경우 전문기획자만 중앙지원 가능 운영비 지자체 지원

관리운영

작은미술관 사업운영 주체(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는 사업실적 및 운영관리를 통해 운영이 미흡한 미술관에는 컨설팅 지원을, 운영이 우수한 미술관에는 인센티브 지원을, 운영이 매우 미흡한 미술관은 지정해제 등 관리를 위해 관리시스템을 마련함

작은미술관 운영주체(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 등)는 작은미술관이 조성목적 및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체 평가/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여 상시 관리 운영시스템을 마련함

- 사업대상 선정시 자체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환류체계 마련 여부를 검토하여 작은미술관 자체적으로 운영/관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함
- 실제 문예회관의 경우 단 년도 계획 수립하는 비율이 74.5%, 전시장 운영 측면에서 전시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 비율은 19.1%, 환류체계를 가지고 있는 곳은 16.4%에 불과함[9)]

9) 예술경영지원센터, 2016 문예회관 운영현황조사, 2016, P53-54, 61-62

작은미술관 SMALL MUSEUM

5 작은미술관 운영활성화 방안

Ⅴ. 작은미술관 운영활성화 방안

1 운영지원
2 네트워크구축
3 법제도지원

1 전문인력 지원

필요성

작은미술관 운영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의 하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며, 실제 작은미술관 및 문화시설 전시실 운영에 있어 1명 이하의 전문인력이 전시기획에서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미술관 등의 전시 및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임

- 미술관 등록요건의 하나로 최소 1명 이상의 학예사가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지만 미술관 등에서는 '학예사 1명이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1명의 인력으로 고유 업무인 전시기획에서 행정업무에 이르는 모든 관련 업무를 담당[10]하고 있음(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2014 재인용)

작은미술관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명이상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운영주체(지자체 및 문화재단 등)의 인력운영 역량에 따라 최소 전문 인력 1명 이상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작은미술관 담당자 및 문예회관 전시운영자 의견조사 결과 작은미술관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3명의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지원사례

문화시설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생활문화센터의 지역문화전문인력배치 및 활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상주작가지원 사업 등이 있음

<표 61> 문화시설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례

구분	지역문화전문인력 배치 및 활용	도서관상주작가지원사업
사업내용	생활문화시설의 전문성과 자발적 운영역량 제고	전국 공공도서관에 문인(1인)상주하여 지역 주민 또는 청소년 향유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
예산액	인건비지원(1인 월 200만원:국비50%, 지방비 50%), 프로젝트기획/운영비 500만원내외	급여(월 2백만원, 식대, 4대보험료 포함)
사업기간	1년	9개월
지원대상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문인(해당지역 내 거주자 및 활동작가 우대)
사업수행기관	생활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력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4

도서관상주작가업무분야

문학큐레이터로서,

- 시민 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문학체험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그 외 각종 문학체험 및 향유확대를 위한 소관업무 개발 및 수행

사업추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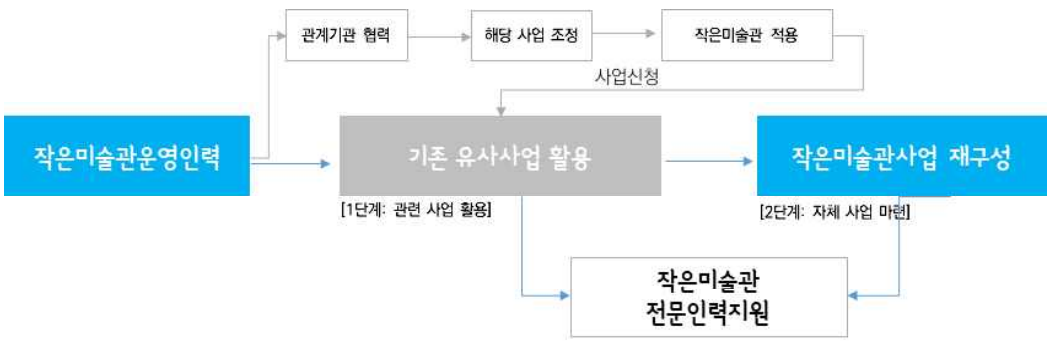
작은미술관 기본적인 운영비는 해당지자체(운영 단체 등)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작은미술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지원 사업을 추진함

우선 생활문화진흥원 등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역문화전문인력 배치 및 활용'사업의 지원대상 기관으로 작은미술관이 포함되도록 함. 향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 상주작가지원사업'과 같은 형태의 '작은미술관상주작가' 지원 사업을 통해 작은미술관 특히 사업기간(3년)이 지난 후 작은미술관이나 기존전시공간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지원함

- 사업추진 기관과 업무협력을 통하여 해당 사업을 조정하여 지원대상으로 작은미술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작은미술관이 해당 사업을 신청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단계적으로 작은미술관사업 내에서 작은미술관 운영인력 양성 사업과 연계하여 전문인력지원 및 배치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작은미술관 운영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함

- 작은미술관 양적 확대 및 사업확대 단계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또는 작은미술관 플랫폼(가칭 진흥센터 등)에서 작은미술관 운영인력 양성 및 배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작은미술관 사업 재설계함



[그림 61] 사업추진 방향

2 사업비 지원

필요성

작은미술관 운영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 중 하나는 전시기획 및 프로그램 등 사업비 마련이며, 특히 전시기획과 관련하여 전시품 수급이 하나의 문제로 대두되고 미술작품은 서적과 달리 초기 구입비가 높고, 구입 후 보관/수장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함

- 작품 전시 및 운송 중 훼손 시 막대한 가치 손상(유일품의 특성)이 우려되어 미술품에 대한 보험료 및 운송(특수운송)비 등 부대경비가 많이 드는 특성이 있음
- 문예회관 전시담당자 의견 조사 결과, 작은미술관 지원 형태로 전시와 프로젝트 비용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남

작은미술관에서 미술품을 구입 소장하기에는 예산 및 공간적 어려움이 있어 작은미술관에서 다양하고 질 높은 전시를 위해서는 사업비 지원 및 미술작품을 공급/지원할 필요가 있음

- 미술은행(공공영역)과 연계하거나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미술공유서비스(민간영역)의 미술품대여 및 전시지원 사업, 미술공유서비스(미술작품 운송지원/신진작가 전시개최지원) 등과 같은 시스템을 통해 전국 작은미술관에 미술작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함
- '작은미술관' 플랫폼(중계단)이 구축되어 이를 중계/지원 할 수 있는 조직시스템이 필요함

사업사례

미술관 및 전시공간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위원회의 시각예술창작 및 전시공간지원 사업, 미술은행의 미술품 대여 사업, 미술품 운송 지원 사업 등 사업비 및 미술품 수급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 있음

<표 62> 시각예술창작 및 전시공간지원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시기	매해 단년도 사업 운영
주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목표	- 민간에서 운영 중인 시각예술공간을 지원함으로서 시각예술 창작 활동의 거점을 확충하고 예술단체의 안정적 창작 기반 제공
사업방향 및 원칙	-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미술관, 비영리전시공간(대안공간)을 대상으로 전시계획서 공모 - 우수기획전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운영실적을 가진 공간 - 연간 사업계획 중 복수의 전시 및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으며, 명확한 주제 및 기획의도를 가진 신작위주로 구성된 기획전을 3회 이상 포함해야 함
지원 규모	1천만 원 ~ 8천만 원 내외

<표 63> 미술품 대여 사업사례

구분	(재)미술은행 대여	미술품 대여 및 전시지원 (미술공유서비스)
사업내용	미술작품 구입과 대여, 전시활동을 통해 국내미술 시장 활성화와 미술문화대중화, 문화향유권 신장을 목적으로 설립	학교/병원 대상 무료대여 및 전시사업 추진을 통한 미술품 공유 활성화 및 미술공유서비스 등록 작가의 작품홍보, 전시활동 및 시장진출기회확대
예산액	대여기관과 수수료는 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 운영규정 제18조(미술품의 활용)에 의거 유상대여를 원칙으로 하지만 1항 3에 따르면 '미술은행 홍보 및 대여촉진을 위한 문화행사 또는 관장이 미술관 정책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 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상대여	단체별 최소 2,000만원, 최대 3,000만원 지원 지원단체 자체부담금 신청금액의 10% (작품대여료 무료, 미술품 운송/보험료, 작가수수료, 홍보마케팅비, 부대비용, 회계관리 수수료 등 지원)
사업기간		4개월
지원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외공관, 지역 문화예술 회관, 공/사립미술관,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기업 등	민간단체가 주관하여 기획/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병원 대상
사업수행기관	미술은행(국립현대미술관)	예술경영지원센터

미술은행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미술은행은 5개(시도4개, 시군구 1개). 시 · 도미술은행은 인천미술은행, 남도예술은행(전남), 바람난미술(서울). 경기도미술품거래소이며, 시 · 군 · 구 미술은행은 성남미술은행이 유일함

구분		인천미술은행	성남미술은행	남도예술은행	경기도 미술품거래소	바람난미술
운영모델		미술은행(대여)		공공갤러리(대여 · 판매)		
운영주체		인천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	민간위탁	서울문화재단
구입	구입여부	구입	구입	구입	구입	대여(1년)
	작가	인천출신 인천활동	1년이상 성남거주	전남/2년이상 거주	2년 이상/경기 거주, 사업장	제한없음
	장르	제한없음	제한없음	4개분야	제한없음	제한없음
	방법	공모, 현장구입	공모	공모	공모	공모, 추천
활용	대여기관	공공기관, 기업	공공기관, 기업, 일반인	공공기관, 기업	공공기관, 일반인	일반인
	대여방법	유상대여	유상대여, 무상대여	유상대여,무상대여	유상대여	유상대여
	판매방법	-	-	토요그림경매 온라인판매	갤러리판매 온라인판매	그림가게판매 온라인판매

미술공유서비스(www.k-artsharing.kr) : 작가와 화랑/대여업체의 연계를 위한 오픈 플랫폼(BtoB)으로 작가는 본인 프로필과 작품정보를 제공, 대여업체는 작가의 작품을 대여/구입, 화랑은 작가와 전시/전속계약을 맺을 수 있음
2018.1 현재 작품 778건, 작가222건, 대여업체4건, 화랑50건 등록되어 있음

<표 64> 미술작품 운송지원 및 전시지원 사업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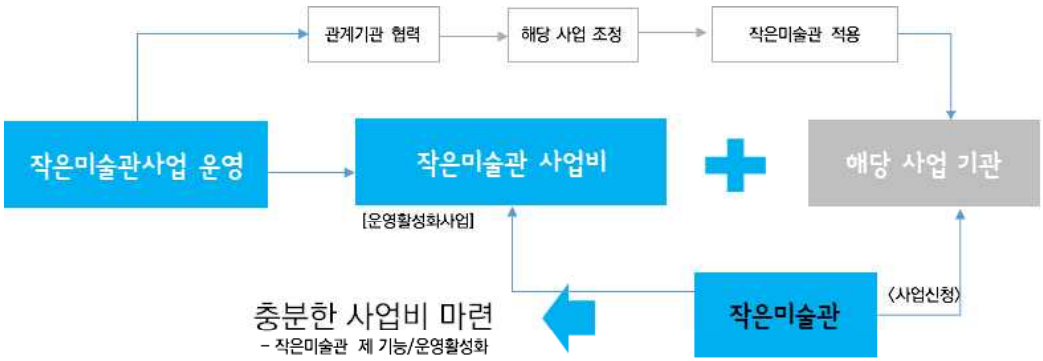
구분	미술작품 운송지원	신진작가전시개최
사업내용	미술작품 대여활성화, 작품 운송비 지원을 통해 대여업체, 화랑의 미술작품대여 시장 및 국민의 미술향유 문화확대 -작품대여를 위한 운송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작가에게 작품 호보 및 전시활동 기회제공 화랑의 전시 지원을 통한 미술공유서비스 참여 유도
예산액	단체당 500만원 정책 지원(단체 자체부담금 지원금의 20%)	단체 당 200만원 정액지원(화랑자체 부담금 100만원 이상 책정 필수: 전체 사업비의 30%이상)
사업기간	2개월	1개월
지원대상	미술공유서비스에 등록된 작가 작품을 대여하는 민간단체(대여업체/화랑 등)	미술공유서비스에 등록된 신진작가의 전시를 기획하는 민간단체(화랑 등)
사업수행기관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영지원센터

사업추진 방향

작은미술관 기본적인 운영비는 해당지자체(운영 단체 등)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작은미술관 활성화를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함

기본적으로 작은미술관 사업에서 사업비(기획인력인건비, 전시비 및 부대비용,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비 등)을 지원하며, 추가적으로 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련 사업을 활용하여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타 기관의 사업운영 조건을 검토하여 작은미술관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지침 및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그림 62] 사업추진 방향

02. 네트워크 구축

1 작은미술관 플랫폼 구축

필요성

작은미술관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작은미술관 설립에서 운영, 위치정보 및 프로그램내용, 미술관 간의 정보교류 등 업무, 통계 업무 등이 종합/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함. 전국 6,346개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 적극적인 설립 및 운영지원을 통해 양적 확대가 필요함(박물관/미술정책 종합발전계획 등과 연계 검토)

실제 미술시장은 2015년 28,480건 총 거래금액 390,382백만원 규모로 2013년부터 조금씩 성장하고 있으며, 미술향유 실태 역시 저조한 편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현재/미래에 대응 국민의 미적 감각/미적 감성 향상은 도서관 등을 통한 정보지원서비스(온라인 정보서비스 증가 vs 도서관 기능/역할 감소추세)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제로 미술관 및 미술서비스의 양적 확대는 중요한 과제임

■ 일본은 지방 소도시까지 합쳐 크고 작은 미술관이 5,000여개 조성

미술관의 양적증대는 정부의 미술관 정책과 일본시민들의 미술에 대한 관심으로 가능하게 됨. 일본에서는 예부터 미술이 대중적인 성격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봉건시대부터 특정 계층의 문화가 아니라 대중과 함께 즐기며 발전함. 미술 표현이 평이한 내용부터 고차원 내용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미술분야로 보고 사진, 판화, 파노라마, 엽서, 만화, 삽화 등 넓고 다양하게 미술영역으로 인식함. 이에 개인 소장품 등 상당한 컬렉션을 전시하며 미술관 조성 확대됨. 정부는 1970년대부터 미술관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국적으로 미술관 건설 붐이 일었고 경제 침체로 미술관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지적 되었을 때에도 지원을 축소하기 보다는 정책적, 재정적으로 투입 확대. 미술이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미술의 공공성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공적비용 확장, 제도정비, 미술관 시설 개선, 학예사 지원, 전시회 미술품 손해배상 관련 법률, 해외 미술품 국내 공개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함

운영사례

문화시설 네트워크 및 사업관리/시설운영지원 등과 관련하여 지역생활문화진흥원(생활문화센터조성 및 지원)과 같이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형태가 있고, 작은도서관통합플랫폼과 같이 기존조직(도서관추진단)을 활용하여 플랫폼을 운영하는 형태로 구분 가능함

작은도서관은 현재 전국 6,346개 등록/운영되고 있어 작은도서관 통합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작은도서관 지역네크워크 연결, 작은도서관 등록지원,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 지원 등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음

- 작은도서관 플랫폼을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평가 등 통합/관리함



바로가기 서비스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작은도서관 지역네트워크/운영정보자료실/질문과답변

→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2018.1.15.-2.14

(1차 지자체담당자: 소속 작은도서관 정보 입력/2차 현장운영자 통계입력/3차 지자체담당자: 미입력자료 및 오류수정

생활문화진흥원(현 지역문화진흥원)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전담 기관으로 2016년 5월에 설립되어 생활문화시설 조성, 생활문화동호회활성화, 생활문화 활동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전국 생활문화제 개최, 전문매개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현재 15명의 운영인력이 생활문화센터 128개소 조성 운영/지원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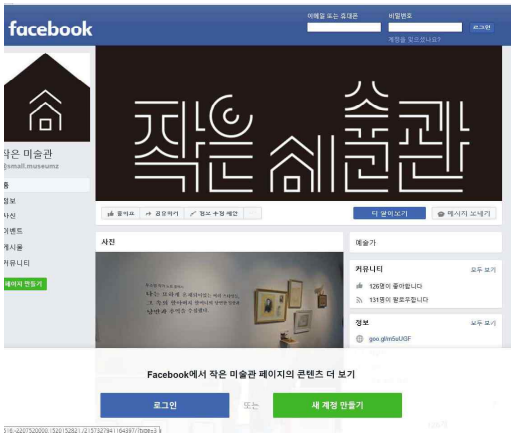
<표 65> 생활문화진흥원

구분	내용
사업목적	국민 생활문화 진흥 기여 -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내용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활성화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문화이모작 지역문화전문인력 배치 및 활용사업

사업추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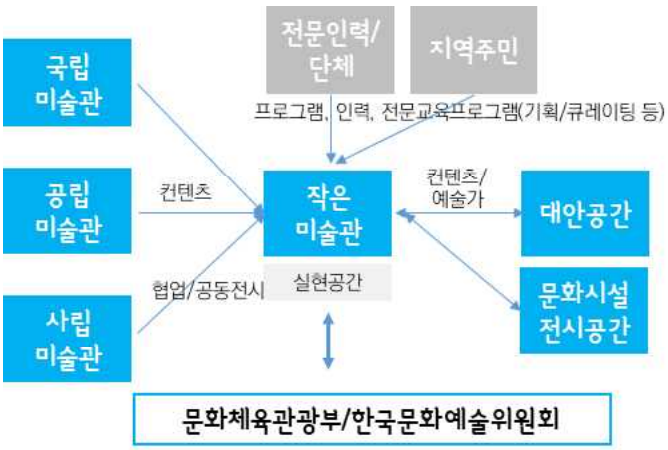
작은미술관의 경우 현재 7개가 운영되고 있으나 생활문화진흥원과 같은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데는 규모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플랫폼과 같은 통합운영시스템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작은미술관은 작은미술관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작은미술관 사업확대 단계와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페이스북 활성화 → 통합플랫폼 구축 → 전담 운영 조직 마련(가칭 작은미술관진흥법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함



아울러 작은미술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소장 및 수집 기능이 없고 전시와 교육 중심인 실속형 미술관으로 수집/소장 기능을 대신 해 줄 수 있는 등록미술관과 협업으로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연계를 도모함

- 작은미술관을 중심으로 미술관 및 대안공간 등 전시시설과 지역 예술단체, 동호회, 예술가, 전문문화기획가, 활동가 등이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함



[그림 63] 네트워크 구축안

2 작은미술관 운영 컨설팅

필요성

작은미술관 운영 및 문예회관 등 전시실 운영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으로 전시사업비 마련,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 전문인력 지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작은미술관 관리운영체계마련을 위한 컨설팅과 운영자에 대한 역량 강화지원이 필요함

- 작은미술관 운영/관리 컨설팅, 전시 외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원, 작은미술관 운영자 역량강화 및 운영노하우 공유 할 수 있도록 작은미술관 운영자 협의회 구성 기반 지원 등이 필요함

운영사례

작은미술관 운영자 역량강화 지원 등 운영활성화를 위한 유사사례는 생활문화센터 운영활성화지원사업 및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지원 사업 등이 있음

<표 66> 생활문화센터(현재 128개소) 운영활성화 지원 사업

구분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지원	운영자 역량강화지원
사업기간	2017년 3월-12월	2017년 5월-10월	매년 2회
사업대상	조성/운영담당 지자체 및 단체	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운영담당자
지원내용	2017년 생활문화센터조성/운영 분야 전문가 매칭 컨설팅 조성: 조성 추진 단계별 컨설팅 운영: 운영계획 수립/운영기반확충을 위한 컨설팅(주민커뮤니티 구성, 조직운영, 홍보, 사업기획)	점진적 운영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공모 예산지원 - 총 120,000천원 지원 - 이용자수요조사, 선진지 견학, 주민작품전시회, 워크숍 등	생활문화센터 성과공유, 발전방안 논의 및 네트워킹의 장 - 워크숍, 포럼, 토론회, 교육 등 형태로 진행
사업방법	운영자 통합컨설팅 워크숍/ 프로그램 지원사업 컨설팅/수시컨설팅	3년간 76개 생활문화센터 참여	역량강화교육 매년 2회 성과공유회 매년 1회 네트워크 지원사업 매년 1회
실적	2014년(90회) 2015년(101회) 2016년(114회)	2014(29회) 2015(45회) 2016(25회)	

사업추진 방향

작은미술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컨설팅 및 프로그램지원, 운영자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컨설팅 지원사업은 조성/운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자 대상 컨설팅 및 워크숍을 진행하여 작은미술관 운영에서 발생하는 문제 최소화하고,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

작은미술관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전국의 작은미술관 운영자들이 모이는 <협의회 조성 기반>을 마련함

- 협의회 조성을 통해 운영자들이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하며 서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나누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운영자 협의회를 통해 운영 규정을 함께 만들어나가며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해 작은미술관이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
- 운영자 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운영평가를 규정에 따라 시행하며 작은 문제점들부터 내부적으로 개선 해 나아갈 수 있는 체계 구축이 가능함

정기적인 워크숍 진행을 통해 운영자 역량강화,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연간 약 2회 정도의 정기 워크숍 개최를 통해 운영자들이 지역별 작은미술관 운영 현황을 서로 나누고,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등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며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나아가 지역에 위치한 미술관, 대안공안, 문화의집, 문화예술회관 등 전시공간을 보유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공동협의회)를 구축하여 상호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작은도서관 운영자 협의회 사례

(사)한국작은도서관협회는 작은도서관의 지역문화커뮤니티 기능강화와 운영자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자 권역별 워크숍을 개최함

각 지자체의 주관 하에 지역별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동행사를 진행함



익산시 작은도서관5주년 기념토론회



어린이 동시대회(2017)/익산시작은도서관협의회

자료: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ormadangnews&logNo=220997019535,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uwona01&logNo=220505457717

3 작은미술관 홍보 및 브랜드 구축

필요성

작은미술관 방문객 조사결과, 오늘 처음 알게 되었지만 실제 작은미술관을 경험해 보니 작지만 특별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채로운 경험들을 보다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쉽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음

- 작은미술관 방문객의 2016년 47%, 2017년 33.6%가 지인을 통해서 방문하고 있어 대내외적으로 작은미술관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작은미술관 담당자 워크숍 결과, 작은미술관의 방문객 호응도와 만족도는 높으나 홍보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미술관을 알림에 있어 각각의 작은미술관은 운영예산 및 인력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운영사례

작은미술관의 운영 및 성과 등을 홍보하는 방법으로는 전국작은도서관대회, 세계박물관대회 등과 같이 내부적으로 성과를 공유하는 방안과 박람회/엑스포 등에 참가하여 작은미술관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확산하는 방안이 있음

■ 전국작은도서관대회(2016)
목적: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관계자들의 정보교류를 통한 인적네트워크 구축, 작은도서관 운영내실화 방안모색 및 지원정책 실효성 제고,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격려로 인한 자긍심 고취
주제: 지역독서운동의 뿌리, 작은도서관
참석대상 및 인원: 작은도서관 운영자, 사서, 관계자 800명 선착순
행사내용: 우수작은도서관 사례발표 및 분임강의(토의) 등





그림자료: 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je_go_kr&logNo=220714578619

■ 공예 트랜드페어 지역공예관(2013)/2015 공예플랫폼〈공예가맛있다〉전시
목적: 지역별 지자체와 지역을 대표하는 공예단체가 참여하여 특색있는 공예품 전시
행사내용: 공예트랜드페어 별도의 지역공예관〈지역별 주제관 설치 운영: 이천 생활 속 도자 디자인, 안동 전통한지공예〉하고, 특히 해외 초청전〈영국/프랑스 등 공예청 초청〉을 통해 각국의 각 지역 대표하는 작가와 작품 전시하고, 향후 업무협약을 통해 양국 문화교류 기반 마련

사업추진 방향

대외적으로 문화소외지역에서의 작은미술관의 역할 및 기능, 성과공유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지역에 위치한 작은 전시공간들이 전문적으로 시각예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술관으로써 기능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작은미술관 브랜드를 구축하여 나감

국내 작은미술관과 해외 작은미술관 교류전 또는 국제세미나/워크숍/대회 등을 통하여 작은미술관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특히 5,000여개의 작은미술관 조성을 목표하는 일본과 동네마다 작은미술관 하나는 있는 유럽의 나라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작은미술관의 기능과 역할 등을 재조명함
- 세계 또는 한일 작은미술관 교류전 또는 워크숍 등을 통해 지역마다 나타나는 작은미술관의 개성과 지역성, 작은미술관이 발굴한 작가들의 작품과 주민프로젝트 등을 세계에 소개하는 자리를 가짐으로써 작은미술관에 대한 미술적/사회적 관심을 증가시키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지역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감수성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킴

지역의 특성과 성과 등을 홍보하는 전국단위의 박람회에 작은미술관 전시관을 설치하고 각 작은미술관의 특별전과 성과 등 홍보함으로써 작은미술관의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대한민국지역희망박람회[11] 등에 작은미술관 홍보관(전시관) 등을 설치하여 문화소외지역에서 작은미술관이 일으키는 변화 등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작은미술관의 당위성 등을 공유함
- 박람회와 함께 작은미술관 성과공유 대회 등을 개최하여 작은미술관 운영자 및 관계자 등 정보교류와 우수사례 등을 상호공유할 수 있도록 함

그 외 각 작은미술관과 한국예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공동으로 페이스 북이나 SNS, 뉴스기사 등을 통해 지역에서 작은미술관이 하고 있는 작지만 큰 역할에 대해 알릴 수 있는 홍보채널을 구축함

- 문화체육관광부 SNS서포터즈, 한국관광공사 블로거단 및 기자단 등 유관기관의 홍보채널을 통하여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작은미술관을 홍보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함

11) 대한민국지역희망박람회: 각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발전 정책과 비전을 공유하는 국내 유일의 지역발전 종합행사로 지역발전위원회와 산자부, 17개 시도와 관계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음. 작은미술관 홍보관 설치는 박람회 취지와 다소 거리가 있지만 광의로 해석할 경우 지역성을 찾고 주민에게 행복을 주는 사업을 홍보한다는 측면에서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음

1 문화시설[미술관] 관련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시설

미술관 등 문화시설 관계법은 문화예술진흥법을 토대로 개별 근거법을 두고 설치 및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음

<표 67>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법적종류

구분		근거법	규정
전시시설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역사, 고고(考古), 인류, 민속, 예술, 기술 및 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 조각, 공예, 건축, 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
도서관		도서관법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
공연시설	문예회관	문화예술진흥법	연주회, 무용, 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 학술행사 등의 용도로 건축된 건축물
	공연장	공연법	공연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 및 장소
	영화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구민회관	지방자치법	구민의 종합복지 및 편의시설을 제공, 문화의식의 향상을 목적으로 지역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
	문화의 집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문화보급전수시설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 진흥법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
	국악원	문화예술진흥법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
	전수회관	문화예술진흥법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5), 미술전시공간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재인용

유사시설 관련법

작은미술관과 유사한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작은영화관, 작은도서관, 대안공간 관련 관련법은 다음과 같으며, 작은도서관을 제외하고 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법적근거는 미약함

- 작은도서관의 경우 2009년에 <도서관법>에 작은도서관 규정을 명시하여 작은도서관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작은도서관사업을 추진하면서 2012년 <작은도서관진흥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인 사업추진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양적 확대/질적 관리를 하고 있음
- 작은미술관 사업 확대 운영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문예회관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조성되어 각 시군 운영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표 68> 유사환경 사업 법률 및 조례 종합

구분	법률 내용	비고
작은 영화관	2013년 영화관람 소외지역에 정책적 지원을 위해 작은영화관 등장 - 공공상영관으로 국가와 지자체 지원으로 운영됨 • 2014년 지역특별계정 지정을 기반으로 건립비 지원을 시작함 - 2013년 2개소를 시작으로, 2014년 6개소, 2015년 8개소, 2016년 7개소, 2017년 5개소 건립되는 등 꾸준히 증가함(2018년 상반기 현재 28개소 운영 중에 있음) •「공연법」상 공공공연장의 개념을 빌려와 작은영화관은 공공상영관이라 정의하고 있음	법과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공영화관으로서 정체성 확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작은 도서관	• 1990년대 작은도서관 등장: 작은도서관 협의회 구성 • 2009년「도서관법」에 작은도서관 관련 규정 명시: 작은도서관의 법적 근거 제시 • 2012년 제정된「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의거하여 주민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부의 재정지원을 시작으로 단기간 작은도서관 개수가 급격히 증가함 - 2010 년 이후 작은도서관의 양적 증가로 인한「작은도서관진흥법」 제정 후 100개 이상의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가 생김	2006년 지방자치단체 조례[주)1] 제정 시작으로, 현재 105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있음 - 양적 확장으로 인해 질적 저하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반함
문예 회관	•「舊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연주회, 무용, 연극 등 공연과 전시, 학술행사개최 용도로 건립된 건축물이라 명시 • 문예회관 설립의 법적근거는 별도로 없음	법제도적 근거조항 미비로 전문 인력 및 운영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대안 공간	•2004년 문화체육관광부(舊문화관광부)에 의해 대안공간의 개념이 정리됨 - '신진작가들의 활동거점이 되는 민간 비영리 미술공간'이라고 규정함 • 2005년 비영리전시공간협의회[(사)비영리전시공간협의회]를 설립하여 대안공간 간의 연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으로 공간의 성격을 규정함 - 법제도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	법제도적 근거조항 미비로 전시/교육/인력 관련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자료 : 한국문헌정보학회지(2014), 작은도서관에 관한 법제적 고찰 재정리
*주1) 부록 참조

2 작은미술관 법/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

작은미술관 설치 및 운영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작은미술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작은미술관의 지속적인 운영지원 및 기존 시설 내 전시공간을 작은미술관으로 등록/운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칭 작은미술관진흥법> 제정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단체 등이 설치/운영할 수 있고,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관련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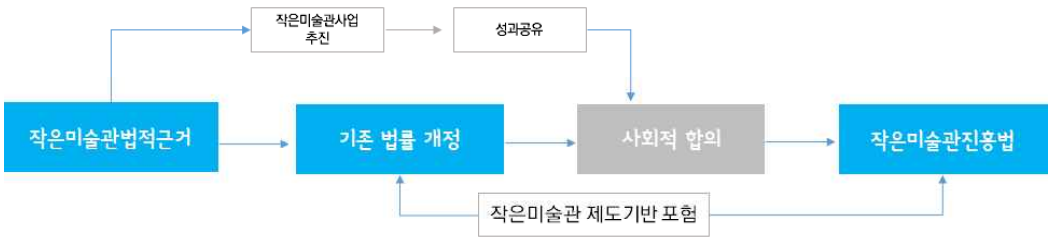
작은도서관의 경우 2012년 <작은도서관진흥법>을 제정하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 설립/육성 등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

작은도서관진흥법

-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작은도서관 대한 후원 등)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업 등의 후원을 진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작은도서관 관련 협회등 설립/육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작은도서관 종사자간의 정보교류 촉진, 전문인력 육성 및 지역주민의 참여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은도서관 협회 등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협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협회등에 관하여 이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비영리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업추진 방향

작은미술관 설치 및 운영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현재 단계에서 개별법을 제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법률의 틀안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작은미술관 사업을 통하여 양적확대 및 질적 관리를 통하여 사회적/정책적으로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한 후 <작은미술관진흥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



[그림 64] 사업추진 방향

작은미술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얻는 방안으로 <작은미술관 제도기반 포럼> 등을 구성하여 작은미술관사업의 당위성, 법/제도 기반의 필요성, 정비 방향 등을 논의하고 발의 할 수 있도록 함

작은미술관 설치 및 운영지원을 위해 관련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등 관련 법 조항을 검토하여 법 개정 시 작은미술관 관련 사항을 추가/개정할 수 있도록 함

- 작은미술관 용어 정의, 설치 및 운영지원 범위 적용, 등록 및 인증 예외적용, 작은미술관 협력망 및 협회, 관련 전담 조직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검토
- 작은미술관은 국공립미술관, 등록미술관 등이 저촉되는 규정이나 절차 등에 관한 예외조항을 만들어 규제는 최소한으로 하고 사업비 지원 등 운영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검토함

<표 69> 기존 관련 법률 개정

구분	현재	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3조(박물관 미술관 구분) ③미술관은 그 설립 주체에 따라 국립/공립/사립/대학미술관으로 구분 제5조(적용범위) 자료관, 사료관....적용한다. 제8조(재산기부 등) ① 박물관 또는 미술관...기부 또는 기증할 수 있다 제16조(등록) ① 박물관과 미술관..등록할 수 있다. 제24조(경비 보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립박물관...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해서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 ① 문화체육부 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보고) ① ... 관리/운영, 관람료와 이용료, 지도감독 현황 등 운영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박물관/미술관 협력망) ②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문화원,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등 다른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4조(협회) ①...미술관 협회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3조(박물관 미술관 구분) ③미술관은 그 설립 주체에 따라 국립/공립/사립/대학미술관으로 구분하거나 운영형태에 따라 미술관/**작은미술관**으로 구분한다 제5조(적용범위) 자료관,..**작은미술관** 적용한다 제8조(재산기부 등) ① 박물관 또는 미술관(작은미술관 포함)...기부 또는 기증할 수 있다 제16조(등록) ⑤ **작은미술관**은 미술관 등록과 별도의 등록방법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제24조(경비 보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립박물관, **작은미술관**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해서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 ⑥ 작은미술관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거나 아나할 수 있다. 제30조(보고) ③ ...**작은미술관**은 관리/운영, 관람료와 이용료, 지도감독 현황 등 운영현황을 보고 별도의 절차에 의해 보고할 수 있다. 제33조(박물관/미술관 협력망) ②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문화원,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작은미술관 등 다른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4조(협회) ...미술관, **작은미술관** 협회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3 작은미술관 모니터링체계 구축

필요성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은 2015-2017년 3년 동안 3차에 걸쳐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2018년부터 기금지원 없이 자체 운영하는 곳이 나타나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으로 작은미술관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은미술관 모니터링 및 운영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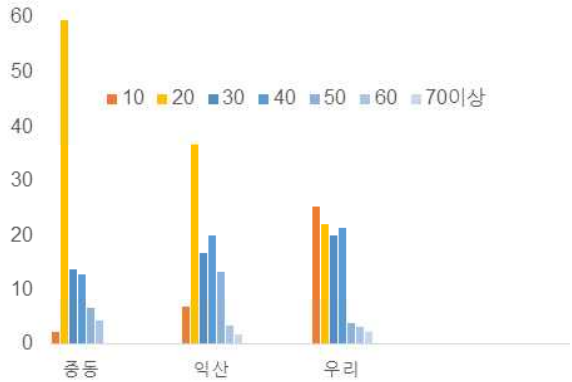
- 두드림작은미술관은 2017년부터 경기문화재단북부문화사업단에서 자체운영하고 있으며, 작은미술관 밖 더 큰 미술관은 2016년부터 자체 운영되고 있으나 사업비 미지원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근거와 체계가 없어 운영실태 파악이 어려움

방문객 조사결과, 작은미술관 조성 위치 및 지역 여건, 프로그램 등에 따라 방문객 특성 및 만족도 등이 달라지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작은미술관 운영추이를 모니터링하여 작은미술관을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작은미술관 특화를 유도하고, 지역특성 등에 따라 특성화된 성과지표 등을 개발하여 작은미술관의 다양한 성과를 도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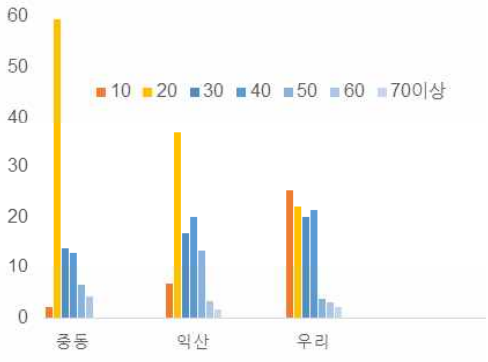
- 2017년 방문객 조사결과, 중동작은미술관은 대전 원도심 활성화 및 청년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수탁관리하는 청춘다락 1층에 위치함에 따라 방문객은 작은미술관 조성 지역외 방문객이 80.9%, 20대, 대학생 빈도가 다른 작은미술관에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작은미술관외 교육관을 별도 운영하고 있는 인천 우리미술관의 경우는 중동과 비슷한 구도심 문화소외지역하고 있으나 여성, 10대, 중고등학생과 주부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지만 연령별/직업별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익산 솜리골작은미술관의 경우 도심에 위치하고 있지만 중동작은미술관과 우리미술관과 달리 큰 특징을 보이지 않음



[그림 65] 성별(2017)



[그림 66] 연령(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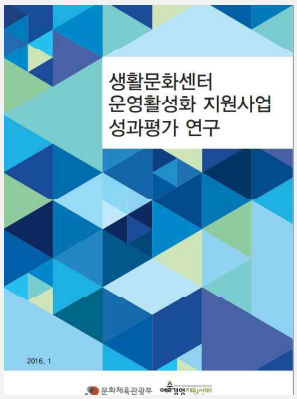
[그림 67] 소속(직업)



[그림 68] 거주지

관련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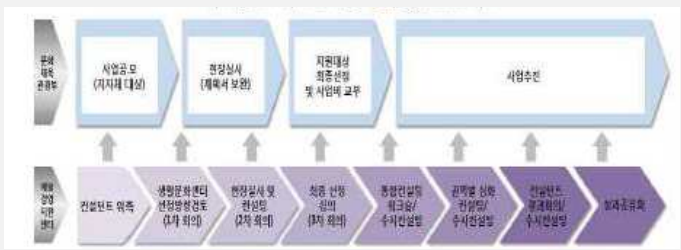
모니터링 체계는 사업지원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컨설팅 및 모니터링과 운영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시설운영실태조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시설 조성 및 운영 가이드북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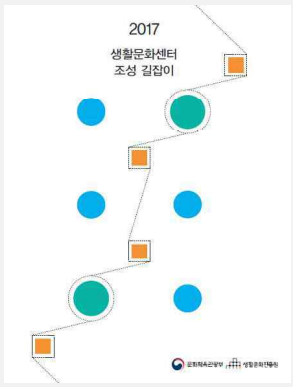


■ 생활문화센터운영활성화지원사업 성과평과연구내용

목적: 선정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평가환류, 차기지원의 근거마련

- 사업실태(생활문화센터 조성현황 및 지원사업현황)
- 평가모델 및 지표개발/평가결과(지원사업별 컨설팅 내용 및 평가결과)





■ 생활문화센터 조성 길잡이

- 생활문화센터의 개념 및 다른 유사시설과의 차이점
- 생활문화센터의 공간구성(역할, 운영환경, 공간환경 별)
- 공간조성 사업의 진행과정 및 주요사항(체크리스트)
- 공간조성 사례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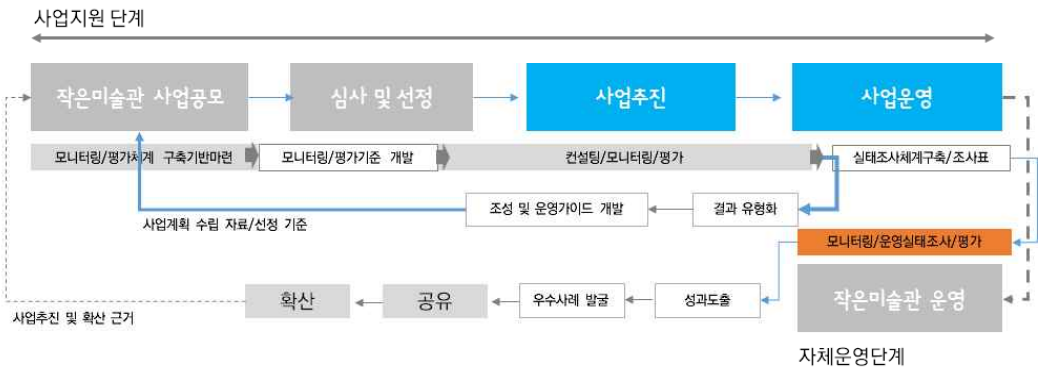
작은미술관 사업지원 기간 동안은 컨설팅 및 모니터링/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사업공모 및 선정 기준, 조성 및 운영가이드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 관리/환류방안을 마련함

- 작은미술관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사업기간 동안 각각의 작은미술관에 대한 운영 특성을 분석하여 차기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 가이드를 개발 할 수 있도록 함
- 작은미술관 조성 위치 및 여건, 전시, 프로그램별 운영현황 및 결과 분석 등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분석 및 평가기준 등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작은미술관을 특성화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함

작은미술관 지원금 없이 자체 운영하는 작은미술관에 대해서는 사업운영에 대한 컨설팅과 모니터링, 운영실태조사 등을 병행하여 작은미술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운영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애로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작은미술관의 성과 등을 공유함으로서 지속적인 작은미술관 운영과 작은미술관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작은미술관 조성 및 지원 사업 확산 근거를 마련함

- 작은미술관은 등록미술관의 평가 및 인증체계와 달리 작은미술관의 조성 목적에 맞게 지속/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자체 평가 및 실태조사 등을 진행함
-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실태조사기간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작은미술관 운영모니터링 및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함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26조(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 16조에 따라 등록한 후 3년이 지난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를 공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인증할 있음
인증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서를 공표하여야 하며, 평가실시, 평가인증의 기준/절차 및 방법과 인증유효기간, 인증표시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그림 69] 모니터링 체계

작은 미술관
SMALL MUSEUM

부록/참고문헌

부록/참고문헌

1 부록
2 참고문헌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 71>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분	내용
제1조(목적)	• 작은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지적 수준 향상에 따른 각종 정보자료의 수요에 대처하고 시민의 평생교육 확대를 통한 지역문화의 창달과 복지문화 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정의)	•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지역주민에 대한 지역정보의 제공, 독서공간 제공, 어린이 독서교육 및 방과 후 프로그램운영 등 지역문화를 만들어 가는 생활친화적인 문화기반시설을 말함
제3조(작은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	•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 마다 작은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작은도서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작은도서관 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작은도서관의 역할강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작은도서관의 협력체계 활성화 등 작은도서관 정책과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 역점 추진과제 및 관계 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시장은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12월말 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작은도서관 선정기준)	• 시장이 작은 도서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문화소외지역(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도서관의 역할이 가능한 지역 - 주민자치센터 내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지역 - 주민의 독서의지가 강하며 연령별 수혜주민이 많고 독서 열기가 높은 지역 - 지방자치 운영 기관 중 다중이용 장소 및 특색있는 시설 - 자체 운영비 및 운영요원의 확보가 가능한 지역 - 지속적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한 지역으로 운영위원회 및 자원봉사회가 조직되어 있는 지역 또는 자원봉사회 조직이 가능한 지역 - 도서관 건립 및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읍·면·동 지역
제5조(작은도서관의 등록 절차)	• 시장이 설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작은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6조(등록취소 등)	• 시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의 중지 및 보조금의 반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이 조례 지시에 위반한 경우 -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구분	내용
	- 작은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목적 및 등록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도서관 등록을 받았을 경우 - 기타 독서에 지장이 있을 경우 • 제1항의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 작은도서관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한다. - 작은도서관의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작은도서관 관련 제도 및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 작은도서관 및 자료의 접근·이용 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 작은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다른 작은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 작은도서관 등록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작은도서관 정책을 위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기획행정본부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도서관과 관련한 관내 기관장, 도서관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시정 주요시책에 깊은 관심과 실천의지를 가진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 도서관련 학과 교수 - 시장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 - 문화계·교육계·전문인사로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 도서관련 시민 사회단체 대표 -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임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은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새로운 작은도서관 정책을 발굴한다. •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임기 및 위해촉)	•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유관기관·단체 소속위원의 임기는

구분	내용
	당해 직에 재직 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나타낸 경우 -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위원이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 위원이 위촉된 분야에서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회의 및 의결)	•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공무원 출석 및 자료제출)	•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지원 등)	•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등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지원)	• 시장은 작은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성인·어린이·청소년 및 장애인의 독서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보급과 독서진흥 - 각종 문화시설·교육시설 등 관련 시설 및 기관과의 협조
제16조(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참고문헌

연구 보고서 / 논문

문화체육관광부(2011), 지역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시범사업 평가
문화체육관광부(2013), 민간의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제주문화재단(2014), 제주 대안공간 및 비영리 문화예술단체 현황조사와 발전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2015), 미술전시공간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6 공연예술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6 미술시장실태조사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5 창조적 문화융성을 위한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설립 방안 연구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7 공연예술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7 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20117), 20117생활문화센터성과공유회자료집
예술경영지원센터(2016), 문예회관 운영현황조사
생활문화진흥원(2016), 2016 문화가 있는날 생활문화동회 활성화지원사업 평가 연구보고서
한국문헌정보학회지(2014), 작은도서관에 관한 법제적 고찰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4),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력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5-17) 작은미술관 세부성과내역 내부자료/성과집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5-17) 작은미술관별 실적보고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7), 작은미술관 모형개발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7), 작은미술관 사업공모지침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7), 작은미술관 운영예산 관련 내부자료

홈페이지

미술공유서비스
(www.k-artsharing.kr)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홈페이지
(http://www.artmuseums.or.kr/project/board_photo.php)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kocaca.or.kr/Pages/Introduction/OrgIntroduction.aspx)

작은미술관 확대운영 방안연구

발 행 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우)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TEL. 061-900-2343 http://www.arko.or.kr
작 성 기 관	㈜지역문화관광네트워크 (우)04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86 바비엥3빌딩 619-1 TEL. 02-773-8035 FAX. 02-773-8036 www.recult.kr
인 쇄 일	2018년 2월
발 행 일	2018년 2월